지역문화기반시설의 수급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기초연구

김홍규



연구책임김 홍 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공동연구노 영 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i

지역문화기반시설은 해방이후 문화원, 박물관 및 미술관, 시민회관에서 문예회관으로 이어지는 설립과 운영으로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 나아가 창조하는 거점이 되어 왔고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정책대상이되었습니다.

요근래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화기반시설과 더불어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이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지방분권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진행과정에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이 건립되어지는일련의 상황이 1970년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의 정치적변화(집권에서 분권으로)와 문화에 대한 관념의 변화(협의의 문화인 '문예'에서 광의의 문화로)의 연장이라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여 그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수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노고와 자문에 응해주신 각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말씀 을 전합니다.

> 2018년 7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정 만**





1. 서 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의 다변화로 인한 정책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의한 문화기반시설의 유형의 건립 및 운영현황을 정책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

□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

-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 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중심적으로 추진
- □ 지역에서의 다양한 기능의 문화시설 건립
-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트렌드의 변화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문화시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 □ 건립예산의 다변화와 문화자치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 포괄적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 식으로 예산교부방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짐
- □ 문화기반시설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한계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관리체계는 문화기반시설의 공간적 구성요소(열람실 및 서고, 공연장, 전시장)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시설 건립 추세에 적절한 대응 단위로서 한계

2) 연구 목적

- □ 지역문화시설의 수급현황 파악
-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건립되고 있는 지역 문화시설 현황을 파악
- □ 지역의 현황과 문체부 대응체계의 연계방향 도출
- 지역문화시설의 수급현황을 새로이 분석하고 수급현황의 근거를 지 방분권과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체부와 지방 정부 및 정부부처의 거버넌스강화(정합성 향상)를 위한 문화기반시 설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도출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에 있는 문화시설이 대상
 - 문체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의 정책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문화 시설이 되며. 국립시설과 사립시설은 제외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문화정책의 태동기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정시기인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문화정책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방향을 예측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문화시설과 관련한 제도 및 환경의 변화 분석, 문화시설의 수급 현황, 문체부 정책대안 개발로 설정

2)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데이터맵에 대한 조사, 전문 가 자문을 적용



[그림 1] 연구 Process

2. 지역문화시설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 가. 문화기반시설의 도입 및 확산 시기(1970~1980년대)
- 1) 문화기반시설 도입 및 확산 관련 정부정책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초기 문화정책은 '문화 =문예'로 보는 혐의의 문화개념에 근거하고 있음. 이 시기에는 민족

문화의 창달이라는 문화적 추체성 확립을 목표로 박정희 정부의 주 도 아래 적극적인 문화정책¹⁾이 추진되는 시기임

○ 박정희 정부를 이은 전두환 정부에서는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 픽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 정계획(1983)에 문화부문 계획이 국가발전 전략사업에 포함되게 되 고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방문화의 육성이 문화부문계획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됨으로써 문화시설의 전국적 확산이 진행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됨

2) 국공립 문화시설의 증가

○ 1970~80년대는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의 신축을 필두로 동종²⁾의 지방공립문화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

□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의 신축

- 1970~80년대에는 종전에 사용되던 시설보다 대규모이고 현대화·전 문화된 국립 문화시설의 신축이 진행
 - 국립경주박물관(1968년 신축 이전 개관)을 필두로, 1970년대의 국립극장(1973년 완공), 국립민속박물관(1975년 개관), 세종문화 회관(1978년 완공), 국립현대미술관(1986년 과천관 완공), 국립중 앙도서관(1988년 본관 신축), 예술의전당(1988년)이 해당

¹⁾ 기반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문예진흥원 부설 미술회관 및 연극회관, 세종문화회관 등

²⁾ 현재, 이들 시설은 등록을 통해 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같은 카테고리(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국립시설의 의도적인 Copy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엄덕문(세종문화회관 설계), 김수근(국립부여박물관(구관), 국립청주박물관 설계), 김중업(주한프랑스대사관 설계), 이희태(국립극장 설계) 등의 우리나라의 건축 1세대들의 작품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식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주요 국립문화시설 현황

	이미기	場を引き	(1) (1) (1) (1) (1) (1) (1) (1) (1) (1)	국립박물관 경주분관	서울시민호관
종전	사용내용	영화관(1,178명 수용)	전사관 등	국립총독부박물관 경주 분관으로 개관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 로 개관	사민 <u>학관(</u> 공연장)
	연면적(m²)	2,457	4,123	率01世7	11,326
	개관연도	1934	1955 (남산국립민 족학박물관으 로부터 0전)	1926 1945	8
	이미거		(ð) rall e 4 4 5 2		
산축	공간구성	대극장(1,500석), 중극장(500석) 등	전시실, 수장고 등	전시실, 수장고 등	대강당(3,895석), 소강 당(522석), 희의정(270 석), 연희정(1,064석), 전시정(1,650㎡) 등 다 목적 문화공간
	연면적(m²)	33,430	19,944	18,940	63,397
	개관연도	1973	1972	1968년 (신축 0전 개관)	1978
프		구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1968년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0전 개관)	사종문화회관

	이미기	대한 대	사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I
종전	\Berne	전사관	전시실 체육관 실내수 영장 극장 설험실 공작 실 음약법 미술실 무용 실, 도서실 등	I
	연면적(m²)	4,123	12,000	I
	개관연도	1973 (경복궁에서 이전)	1970	I
	이미지			
ሎ	공간구성	전시실, 수장고 등	자료실 서ධ 사무실 등	음악당, 전사관, 오페라 하우스, 자료관
	연면적(m²)	37,797	34,772	128,060
	개관연도	1986	1988 (신축 이전 개관)	1988(음악 당, 서예관) 1990(미술 관, 예술 자료관) 1993(오페
지원명 개관연도 국립현대 1월86 (과천관) 1986 국립중앙도사관 (산축 이전 본관 개관)		예술의전당		

국가 독원 누리집(theme,archives.go.kr) hyulimbook.co.kr/files/attach/images/241/29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국립중앙박물관(2017) **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의 이미지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사진임(출처 : themmk.tistory.com/39)

□ 공립문화기반시설의 양적증가

- 공립문화기반시설은 1970~80년대에 량적인 관점과 더불어 증가율 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됨
 - 공공도서관은 1970년대에 52개소가 공급되어 1990년대 이후와 비교하여 절대적인 량에서는 적으나 그 전기인 1960년대보다는 371%가 증가됨
 - 공립박물관은 1960년대까지 인천시립박물관 1개소뿐인 상황이나 1970년대에는 6개소로 600%의 성장이³⁾, 문예회관의 경우 1970년대까지 3개소에 불가하던 상황에서 1980년대에 24개소로 800%의 증가가 이루어짐

〈표 2〉 공립문화시설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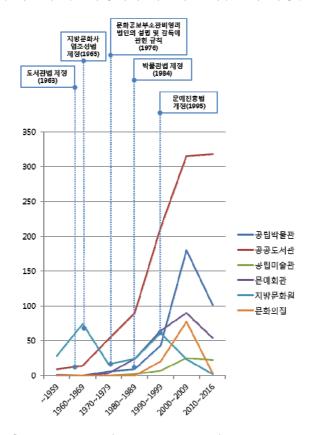
구분	공공도서관		공	임박물관	공	립미술관
기간	개소수	증기율 (전기 대비)	개소수	증기율 (전기 대비)	개소수	증가율 (전기 대비)
~1959	9	0%	14)		_	_
1960~1969	14	156%		_	_	_
1970~1979	52	371%	6	600%	_	_
1980~1989	90	173%	9	150%	2	_
1990~1999	212	236%	43	478%	7	350%
2000~2009	315	149%	180	419%	25	357%
2010~2016	318	101%	101	56%	22	88%
구분		군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기간	개소수	증기율 (전기 대비)	개소수	증기율 (전기 대비)	개소수	증가율 (전기 대비)
~1959	_	_	28	_	_	_
1960~1969	_	_	74	264%	_	_
1970~1979	3	_	16	22%	_	_
1980~1989	24	800%	24	150%	_	_
1990~1999	64	267%	61	254%	20	
2000~2009	90	141%	23	38%	77	385%
2010~2016	54	60%	2	9%	3	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재가공

³⁾ 공립미술관의 폭발적 증가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992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박물관과 미술관의 구분이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미술관의 증가추이에 대한 특이점을 알 수 있다.

3) 문화기반시설의 관리 및 지원 경향

- □ 시설 및 기관의 근거 및 관리 법률 제정을 통한 공법체계에서의 관리근거 마련
- 문화기반시설 공급량 변화와 관련 법률의 제정 추이를 볼때, 공급량의 증가 및 시설의 확산과정에서 시설의 근거법률이 제정됨



[그림 2] 문화기반시설 공급(10년단위 공급량 기준)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이

- □ 시설의 필수 조건의 충족(지방정부)과 중앙정부 지원의 연계를 통한 의미의 합의 (시설의 개념에 있어 추상성의 제거와 구체성의 확보)
- 문화시설의 근거법률은 대체로 시설의 기능과 공간을 규정함으로써

^{4) 1960}년대까지 개관한 공립박물관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1946년 개관) 1개소이다.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에 대한 문화시설의 관리·감독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유주가 스스로 문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문화시설로 인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시설로 편입시키는 구조를 형성

〈표 3〉 문화기반시설별 근거 법률 제정

법렵 (제정연도)	제개정 시유 및 주요 내용	비고
도서관법 (1963)	국내외의 도서자료를 광범하게 수집 · 보존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서관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 - 도서관의 종류 및 시설, 사서배치 기준 제시 - 공공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제시 - 국가등의 도서관 설치권장 - 지자체에 대한 시설 및 설비에 요하는 경비 보조	도서관의 설립 권장 및 지원 성격
지방문화시업 조성법 (1965)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하여 행하는 지방문화사업을 보호 · 육성 지방문화사업자(문회원)의 정의 및 사업 지방문화사업자(문회원)의 신고 및 감독 지방문화사업자(문회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 원 및 관리 · 감독 병행
문화공보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76)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 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을 규정 – 설립허가 및 심사 – 정관작성기준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지방문화원이 해당
박물관법 (1984)	박물관의 건전한 육성 ·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그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 기술적인 지도를 행하고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한 경비를 자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 · 이 용하고 나아가 문화 · 예술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 -박물관의 유형 -박물관의 수행 사업 -시설의 설치 · 운영 · 등록 기준 -학예작원의 배치 -경비의 보조 -박물관협회 설립	박물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감독 병행
문화예술진흥법 전문개정 (1995)	증대하는 국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행정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청달의 기반을 다지며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제도를 개선 -문화예술회관의 정의 추가 ⁽⁵⁾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권장	'문예회관'의 지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참조

^{5) 1995}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추가된 문화예술회관의 정의는 연주회·무용·연극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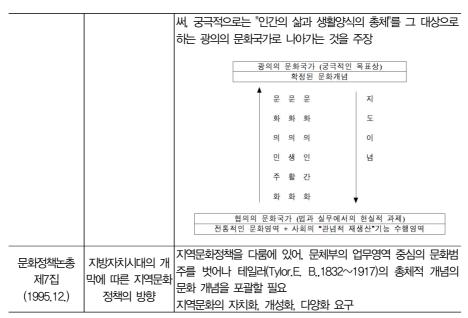
나. 1990년대 이후 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 및 환경

1) '문화'의 개념 변화(협의의 '문예'에서 광의의 '문화'로)

- 1990년대는 초반 군사독재가 종식에 따른 민주화, 포스트 모더니즘 으로 사상적 변화, 다양성, 다원주의의 조류가 대두되면서, 우리사회 는 권위주의와 결합된 집권의 기조에서 분권으로 권력구조가 재편됨
- 이 시기를 기점으로 권위주의시대에 통용되던 문화를 협의 개념인 문예로 간주하던 관점에서 광의의 개념인 삶의 양식적 총체로 보는 인류학적 관점의 문화로 문화의 개념이 확장되는 현상이 관찰됨

〈표 4〉 문화의 개념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문화정책논총 자료를 중심으로)

시기	제목 (저자)	논의 내용
문화정책논총 제1집 (1988,12,)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김이수)	문화 개념 확장 필요 문화현상과 사회경제현상 간의 불가분성과 산업화 과정의 노동 분업과 엘리트 주의에 기인한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통합 필요 조정과 목표의 설정을 통한 구성주의적 문화정책보다 자유주의 적 문화정책의 필요
문화정책논총 제5집 (1993,12)	신한국 문화정책의 목표 : 시민문화의 창달 (한태선)	문화를 사회집단성원의 행위양식으로서 사회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는 지식이나 태도, 신념체계나 사고유형, 그리고 인간 의 의욕과 지적 창조물을 포함하는 의식의 체계(Williams, R의 견해)로 보고 문화유산과 예술진흥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문화복 지가 구현되는 시민사회 문화정책의 필요
문화정책 논총 제5집 (1993,12.)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정갑영)	80년대 중반 이후에 여러 글과 토론회에서 확장된 문화개념에의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의 개념 이 문예개념으로 축소에 기인 Edward B. Taylor의 총체론적 입장에서 정의한, '지식, 신앙, 예술, 법률, 관습 및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로서의 문화개념으로 볼 때 문화정책의 목표성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저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
문화정책논총 제6집 (1994.12.) 한국에 있어서 문화 국가 개념의 정립과 실현과제 (김수갑)		문화국가의 논의에 있어 광·협의 문화개념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음을 주장 문화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의 협의의 문화국가가 전통적인 문화영역과 사회의 관념적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의 민주화, 문화의 생활화, 문화의 인간화 기능을 수행함으로



*자료: 문화정책논총 참조

2) 법제도적 변화

□ 지방자치제 시행

○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가 위임받음으로서 주민의 요구에 따른 지역주도의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로 지자체 의 문화시설 건립에 있어 자율권이 강화
- □ 문화기본법(2014)과 지역문화진흥법(2014) 시행
-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삶의 양식적 총 체로서의 문화개념이 법률로 명문화됨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개념의 도입으로 과거 문예로 한정 되어있던 문화의 개념이 일상의 개념으로 확장됨
-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집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규정

3) 새로운 문화시설 유형의 도입

- 문화의 개념 확장과 분권에 따른 제도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문화시설이 출현함
- 과거의 민족문화, 전통, 장르 기반의 문화시설이 아닌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주민을 향유자의 개념에서 주체적인 창작자로 간주하는 문화시설 유형이 도입됨
- 문화의집(1996),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1999), 생활문화 센터(2014), 창작시설(1997)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2005)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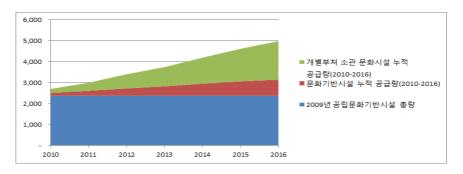
3. 문화기반시설 수급 현황 분석

- 문화의 개념 확대와 분권의 기조는 문화시설 간의 차별성이 적어지고 문체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유인을 줄어들게 하여, 전체적인 문화영역의 확대 속에서 문체부의 실효적 정책범위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문화의 개념 확대와 지방으로의 분권 상황이 문화시설의 수급에 미친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기존의 문체부 문화기반시설총람에 근거한 문화시설(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의 공급과 문체부 및 타부처에서 공급한 광의의 문화시설의 공급을 비교함
- 분석결과 2010년 이후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공급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2016년말 기준으로 전체적인 문화시설 공급총량은 4,983개소로 2010년 2,378개소의 2배 수준이 되었음이 발견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9년 2,378 공립문화기반시설 총량 문화기반시설 132.2 102.2 112.2 101.2 125.2 110.2 85.2 여가 개별부처 소관 증가량 189,3 195,5 292.0 241,0 324.8 313,5 280,2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132.2 234.4 346.6 447.8 573 683.2 768.4 누적 개별부처 소관 189.3 384.74 676.74 917.74 1.242.49 | 1.555.97 1.836.15 증가량 문화시설 1815.5 321.5 1023.3 1365.5 2239.2 2604.6 계 619.1 문화시설량 2,699 2,997 3,401 3,744 4,193 4,983 4,617

〈표 5〉 문화시설 공급량 추이



○ 지자체의 문화예산비중이 일정한 상황에서 문화시설의 증가가 진행될 경우, 증가되는 문화시설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운영여력)인지를 파악한 결과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당 운영비는 문화기반시설 운영비의 2.185% 수준⁶)으로 파악됨

〈표 6〉 문화시설 운영비 비교

구분	문화기반시설 관당 운영비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관당 운영비
산식	BUc/2,378	BUc(0.34 - 768.4/2,378)/1836.15
비율	100%	2,185%

⁶⁾ 문화체육관광부(2012: 59)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관당 연간운영비가 9억원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2 185%에 적용하는 20백만원 정도의 연간운영비가 산출된다

4. 정책개선방향 제안

가. 문체부의 지역 문화시설 관리체계

1) 성립구조

- 1990년대 중반까지 근거법률이 제정된 시설유형(즉, 문화기반시설 총람 상의 시설유형)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메커니즘(문체부의 필수 조건 제시, 지자체의 충족, 문체부의 지원)을 형성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시설(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은 시설 또는 기관의 필요조건을 중앙정부가 제시 하고 있고 등록절차를 통해 지자체의 시설이 문체부가 제시하는 조 건을 충족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서 문체부의 관리 및 지원 범위에 포 함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2) 관리방식

- 문체부의 지역문화기반시설 관리체계는 건립단계에서의 검증과정과 운영단계에서의 지원과정, 사후의 DB집적으로 크게 구성⁷⁾
 - 문체부의 관리체계는 건립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건립에 있어서는 그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

3) 지방분권 및 문화 개념의 확대 상황과의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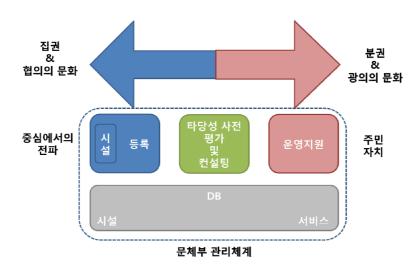
- 등록제도는 시설의 사양을 충족시켜야하는 상황이나 광의의 문화가 강화될 경우 시설 간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⁸⁾
 - 분권의 상황이 강화되어 문체부의 지원수단에서 비교우위가 확보

⁷⁾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운영단계에서의 인증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⁸⁾ 기존에 공급된 전문적 문화시설인 현재의 문화기반시설과는 적합도가 높은 상황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타부처 소관의 문화시설 공급의 제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분권 및 문화개념의 확대 상황과는 적합도가 낮음

- 하지만, 기존에 공급된 전문적 문화시설인 현재의 문화기반시설과 는 적합도가 높은 상황임
- 운영단계에서의 지원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분권의 궁극적 대상인 개인을 지향하고 이것이 주민자치⁹⁾를 뒷받침한다는 면에서 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DB는 가치중립적인 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권력의 분권 및 집권 상황에 관계없이 문체부 관리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게 됨
- DB는 집권 및 협의의 문화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시설사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았던 반면, 분권 및 광의 문화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비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지방분권 및 문화 개념의 확대 상황과 문체부 관리체계

⁹⁾ 권력의 분권 상황에서 결정부하량을 나누어 감당해야 하는 당위는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율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김형국, 1997:189)

나. 정책개선방안(문화기반시설 범주체계 제안)

- 문체부의 기존 관리체계 및 향후 정책변화에서 독립될 수 있는 문화 기반시설의 범주체계를 제시
 - 이는 문화시설정책에 있어 문체부의 업무영역과 지향점을 제시한 다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음
 - 즉, 범주를 구분함으로서 수급에 있어 비교하여야 하는 대상을 제시한 것임
- 가장 광의의 문화시설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생활문화시설을 바탕으로 문화기반시설의 범주체계를 제안함
- 이를 집권과 분권의 상황에 따라 변화단계를 시설중심단계, 과도적 적 단계, 이용자 중심 단계로 구분함
 - 이는 현재의 문화기반시설이 시설과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지 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이용자의 활용(창작, 향유 등)에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임
 - 시설중심단계는 문화기반시설총람 상에 포함된 시설유형이 최근 다양해지는 문화시설 유형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하여 시설사양의 전문성과 비차별성을 기준으로 전용시설 및 복합시설, 문화연계시설로 구분
 - 과도적 단계에서는 정책전달경로상의 매개기관을 두고,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달 및 매개 과정에 적합하도록 거점형 시설과 이용자와 접촉단계의 근린(생활친화)형 시설로 구분
 - 이용자 중심 단계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빈도 및 접근성을 기준으로 상시적 또는 특별(간헐적)한 이용에 따라 시설유형을 구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 수행 필요

〈표 7〉문화기반시설 체계 제안(안)

집권 협의의 문화					분 장의의			
시설 중심 단계			(7-		(단계 중심 단계)		이용자 중심 단계	
성질	구분	시설	기관	성질/ 구분	시설	성질	구분	시설
		공연장			공연장			공연장
	-10	도서관			대표도서관			_
	전용 시설	미술관			미술관		특별 이용 시설	미술관
시설사양 의 전문성		박물관	문화 재단, 문화	거점 형	박물관	특별 이용		박물관
		창작시설			창작시설			창작시설
	복합 시설	문예회관			문예회관			문예회관
		_			생활문화센터 (거점형)			-
		문화의집	원		문화의집			문화의집
		등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센터 (근린형)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양	문화	복지시설		형	복지시설	상시	일반	복지시설
의 비치별성	연계 시설	청소년 시설		(생활	청소년시설	이용	이용 시설	청소년 시설
				친화)	주민센터		"-	주민센터
		주민센터 등			도서관(자관, 작은도서관)			도서관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6 1. 연구 범위6 2. 연구방법8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2장	지역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11
	제1절 문화기반시설의 도입 및 확산 시기(1970~1980년대) ············15 1. 문화기반시설 도입 및 확산 관련 정부정책 ···········16 2. 국공립 문화시설의 증가 ·················18 3. 문화기반시설의 관리 및 지원 경향 ···········22 제2절 1990년대 이후 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 및 환경 ·········28 1. '문화'의 개념 변화(협의의 '문예'에서 광의의 '문화'로) ······28 2. 법제도적 변화 ··························30
	3. 새로운 문화시설 유형의 도입 ·······33 4.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규정 ·····42
제3장	지역문화기반시설 수급 현황 분석 45
	제1절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문화기반시설 수급 현황
	제2절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의 공급현황 분석56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56

	2. 부처별 정책사업 유형별 문화시설 공급현황	·57
제3	3절 수급 분석 ·····	96
	1. 분석의 개요	96
	2. 공급 추이	.97
	3. 운영여력 분석	.98
제4장 정	책개선 방향 제안 ·······1	01
제1	절 현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1	03
	1. 지방분권형 국가 추구1	03
	2.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구조 변경1	
제2	2절 문체부의 지역 문화시설 관리체계 분석1	07
	1. 문체부 지역문화시설 관리체계의 개요1	07
	2. 지방분권 및 문화 개념의 확대 상황과의 적합성	
제3	3절 정책개선방안(문화기반시설 범주체계 제안) ······	112
참고문헌	1	15
ABSTRAC	CT1	19
부로	1	21

표 목차

〈표 1-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4204호, 2016.5.29., 일부개정) 개정이유 ···5
〈표 2-1〉문화시설 관련 정책환경 변환 ······13
〈표 2-2〉 주요 국립문화시설 현황19
〈표 2-3〉 공립문화시설 증가추이21
〈표 2-4〉 문화기반시설별 근거 법률 제정 ······25
〈표 2-5〉 문화시설별 고유목적시설 및 법률상 시설기준26
〈표 2-6〉 문화의 개념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문화정책논총 자료를 중심으로) $\cdot \cdot 29$
〈표 2-7〉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후 비교32
〈표 2-8〉 문화의집 시설 기준35
〈표 2-9〉 문화의집의 법률근거 ·······36
〈표 2-10〉생활문화의 개념 ·······38
〈표 2-11〉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비교38
〈표 2-12〉생활문화센터 운영 시설 유형 현황(2017.12.15. 기준)39
〈표 2-13〉 생활문화시설의 역할별 유형 구분 ·······40
〈표 2-14〉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43
〈표 3-1〉문화시설 공급량 추이47
〈표 3-2〉 문화시설 운영비 비교48
〈표 3-3〉본 절에서의 공립문화기반시설 적용50
〈표 3-4〉 공립문화기반시설 연간 공급량 추이51
〈표 3-5〉시도별 공립문화기반시설 분포52
〈표 3-6〉시군구별 인구10만명당 공립문화기반시설 분포53
〈표 3-7〉시도별 인구10만명당 공립문화기반시설 수53
〈표 3-8〉 시도별 공립문화기반시설의 부담 범위54
〈표 3-9〉 부처별 문화시설 수반사업 ······57
〈표 3-10〉 광역지자체별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58
〈표 3-11〉문체부의 생활문화센터 건립예산 추이58
〈표 3-12〉광역지자체별 작은영화관 공급현황59
〈표 3-13〉작은영화관 건립예산 추이 ······59
〈표 3-14〉 연도별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대상사업60
〈표 3-15〉문화체육관광부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예산 추이60
〈표 3-16〉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추진 현황(2017년말 기준)61

Œ	3-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예산 추이	62
扭	3-18>	연도별 산업단지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대상사업	63
扭	3-19>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예산 추이	64
扭	3-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 예산 추이	64
扭	3-21>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개관연도 현황	65
扭	3-22>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 개요	66
扭	3-23>	도시재생뉴딜 대상사업	68
扭	3-24>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별 사업사례	70
扭	3-25>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문화시설 도입 계획 현황	72
扭	3-26>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세부사업별 문화시설 도입 현황 …	73
扭	3-27>	도시활력증진사업 사업량 추이	80
扭	3-28>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추이	80
扭	3-29>	도시활력증진사업 문화시설 포함 사업 추정량	80
扭	3-30>	2017년 도시활력증진사업 현장점검 대상사업 개요	·81
扭	3-3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내역사업 상위 10개 현황	83
扭	3-32>	일반농산어촌사업지 사례	84
扭	3-3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시설 유형별 공급수량	89
扭	3-3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시설 연간공급량	89
扭	3-35>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대상지역 추진체계 비교	90
扭	3-36>	마을공방 육성사업 분포 현황	90
扭	3-37>	마을공방 육성사업 사업유형	91
扭	3-38>	도시재생 일반지역 특화구상	92
扭	3-39>	문화시설(사업) 연간 증가량 추이	95
扭	3-40>	문화시설 공급량 추이	97
扭	3-41>	문화시설 운영비 비교	99
扭	4-1> [문화시설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주요 사업 현황	09
(丑	4-2> -	문화기반시설 체계 제안(안)1	13

그림 목차

[그림	1-1] 농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9
[그림	1-2] 연구 Process10
[그림	2-1] 문화기반시설 공급(10년단위 공급량 기준)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이23
[그림	2-2] 창동예술촌 현황도41
[그림	3-1]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총개수 및 시도내 기초지자체 평균51
[그림	3-2]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공립문화기반시설 수54
[그림	3-3] 시도별 공립문화기반시설당 부담면적55
[그림	3-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기능(유형)별 내역사업79
[그림	3-5] 도시재생 선도지역 현황92
[그림	4-1]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104
[그림	4-2] 국내문화매개 전달체계상 단계별 역할구분109
[그림	4-3] 지방분권 및 문화 개념의 확대 상황과 문체부 관리체계111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지역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정책환경 변화

1)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 권과 재정분권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는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간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이에 향후 변화되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예측 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에서의 다양한 기능의 문화시설 건립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트렌드의 변화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문화시설 유 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의 근본적인 문화향유 및 창조의 기능 에서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복지, 도시재생, 관광 등의 부가적 용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키비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박물관, 이카이브, 도서관 등 창고(서 고. 수장고) 및 그 내용물을 기반으로 한 시설은 활용단계에서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시설의 유형이 변화되고 있다.

나. 문화기반시설 관련 정부대응체제 개선필요

지역문화시설 건립예산의 다변화, 문화자치의 강화 등으로 지역의 다양

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문화기반시설에 기반한 기존의 정책대응체계의 개 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1) 건립예산의 다변화와 문화자치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포괄적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 로 예산교부방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재정분야에서는 포괄보조 로 제공되는 지특회계에서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대한 계정은 있으나 타계정 (ex.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의 예산을 전용하여 문화시설의 건립에 투입하 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2) 문화기반시설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한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관리체계는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문예회 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의집)의 공간적 구성요소(열람실 및 서고, 공연 장, 전시장)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시설 건립 추세에 적절한 대응 단위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창작스튜디오. 복합시설 등 새로운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의 다변화로 인한 정책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의한 문화기반시설의 유형의 건립 및 운영현황을 정책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 는 개선이 필요하다.

다. 문화기반시설의 수급 문제에 대한 불일치

문화기반시설의 수급에 대한 정량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문 화시설에 대한 현실적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적 증가를 지양하고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의 전환이 사회적인 동의도 얻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표 1-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4204호, 2016,5,29,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이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규제완화 성격을 띠며 수치례 개정해 온 바. 이로 인한 박물관 · 미술관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박물관 · 미술관의 설립 사전평기제 도입,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개선,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가. 지역문화시설의 수급현황 파악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건립되고 있 는 지역 문화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타부처 소관의 시설공급현 황, 신규유형(폐유휴공간 활용, 창작 중심, 복합시설)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나. 지역의 현황과 문체부 대응체계의 연계방향 도출

지역문화시설의 수급현황을 새로이 분석하고 수급현황의 근거를 지방분 권과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체부와 지방정부 및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강화(정합성 향상)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에 있는 문화시설이 대상이 된다. 문체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의 정책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문화시설이 되며, 국 립시설과 사립시설은 제외하였다. 국립시설의 제외사유는 일반적으로 국립 시설과 공립시설은 역할 및 대표성에서 다른 면이 크므로 본 연구의 연구취 지에 맞지 않은 면이 커서이다. 하지만 사립시설은 지역주민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공립시설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정보접근 의 한계로 제외하였다.

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문화정책의 태동기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 법 제정시기인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다만, 문화시설의 공급 현황에 대한 부분은 자료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 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가 되는 지역문화시설의 수급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문체부 외의 정부부처 소관의 공급분을 정확히 파악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적인 총량보다는 문체부와 그 외 부처의 공급특 성(연간 공급분)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 내용적 범위

1) 문화시설과 관련한 제도 및 환경의 변화 분석

'문화'라는 용어의 다의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과 관련한 제도와 화경의 시대적 변화 추이를 조사 분석하였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공표를 기 점으로 문화시설과 관련한 제도. 법률. 공급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 협의의 '문예' 개념의 문화와 광의의 '삶의 양식적 총체' 개념의 문화로의 변화와 정치화경의 변화(독재정권의 종식과 민주화)를 비 교분석하였다.

광의의 문화 개념 도입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 시설의 건립에 있어 지방의 권한 강화와 지원 부처의 다원화를 다룬으로서 현재의 문화시설유형의 다양성과 관리체계의 혼선이 집권과 분권. 협의의 '문예'와 광의 '문화' 개념이 연관되어 나타나는 결과인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2) 문화시설의 수급 현황

문체부 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문화예술의 관점에서의 문화시설 인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의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도서 관, 문화의집의 그 외 시설을 분석함으로서 문체부 소관의 문화시설 공급현 황을 파악하였다.

1980년대 이후 부각된 광의의 문화개념과 그 이전의 협의 문화개념인 문예의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총람에 기재되지 않는 문체부와 타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공급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는 문체부 및 그 외의 부처에서 공급하고 있는 문화시설량이 문체부 문화기반시설총람을 통해 파 악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수급현황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이다.

3) 문체부 정책대안 개발

집권에서 분권. 문화개념에 있어 협의에서 광의로의 변화 등 우리 사회 의 변화과정에서 문체부의 정책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 는 정책환경에 변화(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축소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의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데이터맵에 대한 조사, 전문가 자문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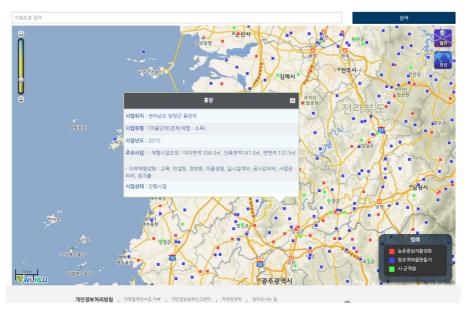
가, 문헌조사

국가기록원 및 법제처 누리집. 관련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여 문화시설과 관련한 정책, 법률의 변화추이를 조사하였고 문화시설의 공급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공급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정보접 근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문헌자료가 지닌 오류를 상쇄하기 위해 개소수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예산자료를 동시에 검색하였다.

나. 공간정보서비스로부터의 자료수집

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각 사업의 현황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공개되는 정보양식을 다시 가공하여 통계자료를 구성함으로써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 하려고 하였다. 일반농산어촌사업의 경우,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 템 누리집(www. raise.go.kr)상의 점들을 클릭하고 팝업된 정보를 정리하 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1)

¹⁾ 이는 본 연구가 문체부가 아닌 타부처의 정책결과를 조시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부처에서 공개되는 가장 말단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만 연구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 농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다.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적 특성과 인과적 요인을 파악하는데 적용하였다.

타부처 소관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공개되는 자료는 문화시설의 개소수 가 아닌 타부처에서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수인 상황이므로 개별 지역개 발사업에서 문화시설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경험을 물어봄으 로서 문헌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지역,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와의 충돌가능성을 파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다.

연구내용

문화시설과 관련한 제도 및 환경 변화

1970~1980년대 문화시설 정책 분석

1990년대 문화개념 확장

집권/분권에 따른 문화시설의개념 변화

문화시설의 수급 현황

제도 및 환경 변화가 문화시설 수급에 미친 영향을 파악

문체부 정책대안 개발

문화시설 분야 문체부정책구조분석

정책환경변화(분권) 에 대응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

연구방법

문헌조사

정책 및 법 률 변화 추이 분석

전문가 자문

주요 변화점 확인

문헌조사

시설 및 사업 현황파악

전문가 자문

사업당 시설공급 빈도확인

공간정보서비스로부터의 자료수집

공개된 정보에 대한 최대 한의 정보 수집

전문가 자문

연구진이 개발한 정책대안에 대한 현실성 보완

[그림 1-2] 연구 Process

지역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난 우리 나라의 정치·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시설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과정을 단순화시키면 아래와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72년~1990년대 중반	걘	1980년대 말~현재
협의의 문화 '문예'	문화의 개념	광의의 문화 삶의 양식적 총체
집권	권력의 이동	분권
시설 중심	정책의 주된 수단	시설 및 운영 중심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의 범주	생활문화시설

⟨표 2-1⟩ 문화시설 관련 정책환경 변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에 벌어진 군사독재정치의 종식과 민주화의 진행은 권력의 집권적 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변화시킨다. 이와 더불 어 문화계에서는 '문예=문화'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주의와 연계된 삶의 양식적 총체로서의 문화개념이 부각됨으로서 다양성 및 다원성 존중의 사회로 변화되는 의식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분권에 따른 개인의 자율성 증가, 사회에서의 다원적 가치의 확대는 문화시설이 기존의 문화시설(문예회관, 도 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이 아닌 생활친화적이고 이용자의 주체 적이고 능동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시설(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 센터, 창작시설 등)로 확대시켰다.

문화기반시설의 도입 및 확산 시기(1970~1980년대)

문화기반시설과 관련한 정책환경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시기인 문화정책의 초기에는 '문화=문예'로 간주하는 협의 문화개념이 적용되고 있었고,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 문화시설들이 건립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에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방문화의 육성을 하나의 정책목표로 담고 있는 문화부문계획이 포함되었고 1970~80년대의 기간 동안 문화시설의 공급은 비약적으로 증가된다.

이러한 공급량 증가에 맞춰 개별 문화시설의 근거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은 대체로 문화시설의 필수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지자체가 충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시설 유형별 필수기준은 해당 문화시설과 다른 시설과의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기준은 대부분 해당 문화시설의 기능을 근거로 한 고유목적시설의 사양과 그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요약하자면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이후 문화시설 관련 정책은 협의 문화 개념인 '문예'의 범주가 구현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문화시설 간의 차별성이 획득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체계임을 알 수 있다.

1. 문화기반시설 도입 및 확산 관련 정부정책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초기 문화정책은 '문화=문 예'로 보는 협의의 문화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민족문화의 창달 이라는 문화적 추체성 확립을 목표로 박정희 정부의 주도 아래 적극적인 문화정책2)이 추진되는 시기였다. 박정희 정부를 이은 전두환 정부에서는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제5차 경 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1983)에 문화부문 계획이 국가발전 전략사업 에 포함되게 되고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방문화의 육성이 문화부문계획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됨으로써 문화시설의 전국적 확산이 진행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과 제1차 문예중흥5개년 계획(1974~1978)

1970년대는 종합적인 문화정책의 태동기 또는 문화예술의 기반조성기 라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 계획은 정부가 1970년대 시작한 새마을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격적인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은 1972년 8월 14일 법률 제 2337조로 제정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을 기 점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류정아, 2007).

하지만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좁은 의미에서 예술정책 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고 정의함으로써. 문화=예술이라는 판단을 은연 중에 가정하고 있다(오명 석, 1998).

문화예술진흥법의 시책으로 1973년 발표된〈문예진흥 5개년 계획〉은

²⁾ 기반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문예진흥원 부설 미술회관 및 연극회 관. 세종문화회관 등

민족문화와 현대문화. 대중문화와 예술을 통해 전통에 입각한 총체적 국가 발전의 목표와 일치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 재발견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류정아, 2007).

무예중후5개년 계획에 의해 박정희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 아래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그 방향과 원칙을 세웠다(김행선, 2012). 총 투자 규모는 485억원이며 국학, 전통예술, 문화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출판, 연예 등 11개분야에서 추진되었다.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 사업은 ①기반조성②문화예술의 전승개발 ③새민족예술의 창조④국제교류의 적극화 등 4개부문으로 나누어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³⁾. 이 중에서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한 성과는 국립경주·공주· 광주박물관 신축. 경복궁에 민속박물관 개장. 문예진흥원 부설 미술회관 및 연극회관 설립 및 운영, 전북예술회관, 남원 및 목포국악원 건립 지원 등이 있다4).

나. 제 5차 및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⁵⁾

1983년 발효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서에서는 문화계획 부문이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포함되었다. 이 계획의 3대 목표 중 문화시 설 관련으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방 문화의 육성이 설정되었다6).

1986년 발표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지방문화의 육성지원 을 위하여 직할시 및 도에 종합문예획관의 건립 및 지역별 문예 특장 전문시설

³⁾ 중앙일보 보도자료에서의 제시순서에서 최선순위는 기반조성이었다.

⁴⁾ 자료: 중앙일보 "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 결산, 전통문화 보존등에 성과푸짐", 1978.12.14.

^{5) (}박광무, 2013)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6) 3}대목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¹⁾문화시설의 확충과 지방문화의 육성으로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②전통문 회유산의 개발과 창작여건 개선으로 문화주체성 확립과 가치관의 혼란을 막고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초를 확립한다 ③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을 계기로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선양하다

10개소 설립,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의 증설 등의 시설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 민족문화중흥의 관점에서 문화재 예산의 비중이 높았 던 것과 달리, 제5곳화국에서는 86아시아경기대회, 88올림픽 등을 위하여 대규모 문화기반 건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문화재 보다 많은 51.6%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립(188 억원). 예술의 전당 건립(1200억원). 독립기념관 및 국립국악당 건립. 창경 궁 및 경복궁 등 조선시대 5대궁의 복원이 진행되었다.

2. 국공립 문화시설의 증가

1970~80년대는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의 신축을 필두로 동종7)의 지방 공립문화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다.

가.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의 신축

1970~80년대에는 종전에 사용되던 시설보다 대규모이고 현대화 전문화된 국립 문화시설의 신축이 진행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1968년 신축 이전 개관)을 필두로. 1970년대의 국립극장(1973년 완공). 국립민속박물관(1975년 개관). 세종문화회관(1978년 완공). 국립현대미술관(1986년 과천관 완공). 국립중앙도 서관(1988년 본관 신축). 예술의전당(1988년)이 해당된다.

이들 유형의 시설은 이전에 국내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우며, 설계과정 에서 국외의 선진 사례가 벤치마킹되었고 void 공간을 활용한 공간감 구성. 관람시야 확보, 특수설비(승하강무대, 공조, 엘리베이터 등), 등 당시로서는 첨단 건축기법이 도입되었다.

⁷⁾ 현재, 이들 시설은 등록을 통해 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같은 카테고리(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국립시설의 의도적인 Copy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엄덕문(세종문화회관 설계), 김수근(국립부여박물관(구관), 국립청주박물관 설계), 김중업(주한프랑스대사관 설계), 이희태(국립극장 설계) 등의 우리나라의 건축 1세대들의 작품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식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 주요 국립문화시설 현황

	이미기	39) 四多帕金子장		만 경주 관 말 자라 국립박물관 경주분관	(2) (4) (4) (4) (4) (4) (4) (4) (4) (4) (4
જ	\ \Be\\B	영화관 (1,178명 수용) ⁹⁾	전시관 등	국립총독부박물관 경주 분관으로 개관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로 개관	시민회관(공연장)
	연면적(m²)	2,457	4,123	확0불가	11,32610)
	개 생	1934	1955 (남산국립민 족학박물관으 로부터 이전)	1926	1981
	이미기		(e) xalo et san		
샪	공간구성	대극정(1,500석), 중극정(500석) 등 ⁸⁾	전시실, 수장고 등	전시실, 수장고 등	대강당(3,886석), 소강 당(522석), 희의정(270 석), 연회정(1,064석), 전사장(1,650㎡) 등
	연면적(m²)	33,430	19,944	18,940	63,397
	개관연도	1973	1972	1968년 (신축 0전 개관)	1978
판		국립극장	국립중앙	국립경주 박물관	서종문화한관

8) 1973년 개관시 대극장과 중극장으로 구성 9) 명치좌의 건립기준임 출처: 위키백과 누리집(ko.wikipedia.org) 10) 출처: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 IAI			썆				쌍전	
	개관연도	연면적(m²)	공간구성	이미기	개관연도	연면적(m²)	\ 사용\ HB	이미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986	37,797	전사실, 수장고 등		1973 (경복궁에서 이전)	4,123	전시만	마마마마마마마 터수궁 석조전
1988 국립중앙도사관 신축 이전 본관 개관)	1988 (신축 이전 개관)		34,772 지료실, 서고, 시무실 등		1970	12,000	전사실 채유관 실내수 영장 극장 살람실 공작 실 음악별 미술실 무용 실 도서실 등	어린이호관
예술의전당	1988(음악 당, 서예관) 1990(미술 관, 예술 자료관) 1993(오페	128,060	음악당, 전사관, 오페라 하우스, 자료관		I	I	I	I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국가기록원 누리집(theme.archives.go.kr)

hyulimbook,co,kr/files/attach/images/241/297 ユロギの世帯エルのパカ

국립중앙박물관(2017) **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의 0미지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사진임(출처 : themmt,tistory.com/39)

나. 공립문화기반시설의 양적증가

공립문화기반시설은 1970~80년대에 량적인 관점과 더불어 증가율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공공도서관은 1970년대에 52개소가 공급되어 1990년대 이후와 비교하 여 절대적인 량에서는 적으나 그 전기인 1960년대보다는 371%가 증가된 다. 마찬가지로 공립박물관은 1960년대까지 인천시립박물관 1개소뿐인 상 황이나 1970년대에는 6개소로 600%의 성장이11). 문예회관의 경우 1970 년대까지 3개소에 불가하던 상황에서 1980년대에 24개소로 800%의 증가 가 이루어진다.

〈표 2-3〉 공립문화시설 증가추이

구분	공	공공도서관		립박물관	공	립미술관
기간	개소수	증기율 (전기 대비)	개소수	증기율 (전기 대비)	개소수	증가율 (전기 대비)
~1959	9	0%	1 12)		_	_
1960~1969	14	156%		_	_	_
1970~1979	52	371%	6	600%	_	_
1980~1989	90	173%	9	150%	2	_
1990~1999	212	236%	43	478%	7	350%
2000~2009	315	149%	180	419%	25	357%
2010~2016	318	101%	101	56%	22	88%
구분	문예회관		ㅈ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기간	개소수	증기율 (전기 대비)	개소수	증기율 (전기 대비)	개소수	증가율 (전기 대비)
~1959	_	_	28	_	_	_
1960~1969	_	_	74	264%	_	_
1970~1979	3	_	16	22%	_	_
1980~1989	24	800%	24	150%	_	_
1990~1999	64	267%	61	254%	20	_
2000~2009	90	141%	23	38%	77	385%
2010~2016	54	60%	2	9%	3	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재가공

¹¹⁾ 공립미술관의 폭발적 증가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992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박물관과 미술관의 구분이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미술관의 증가추이에 대한 특이점을 알 수 있다.

3. 문화기반시설의 관리 및 지원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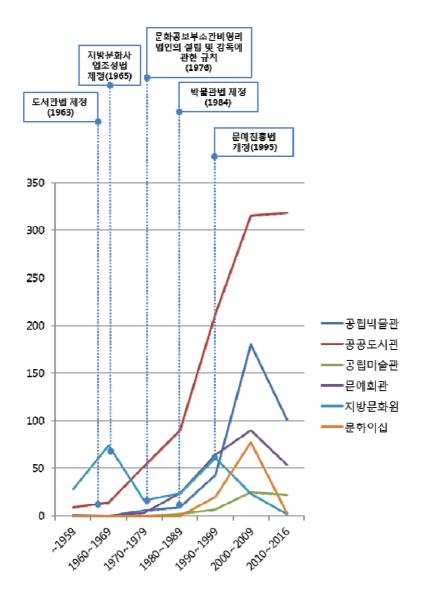
문화시설의 공급이 시작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관리 법률이 제정되는 데 이들 법률은 대체적으로 시설 및 기관의 근거와 지원규정을 함께 갖추게 된다. 이들 법률은 대체로 시설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시설의 필요조건이 다른 시설과 차별되 지 않을 경우 제도운영을 위한 보완수단이 요구된다.

가. 시설 및 기관의 근거 및 관리 법률 제정을 통한 공법체계에서의 관리근거 마련

10년 단위로 공급된 문화기반시설 공급량 변화와 관련 법률의 제정 추이 를 볼때. 공급량의 증가 및 시설의 확산과정에서 시설의 근거법률이 제정됨 을 알 수 있다.

시설의 근거법률은 대체로 시설의 기능과 공간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에 대한 문화시설의 관리·감독과 지원에 관한 내용 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주도의 문화시설 공급상황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사법보다는 공권력에서 출발한 공익과 사이간의 이해조정이 진행되는 공법(행정법)의 영역에서 문화시설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2) 1960}년대까지 개관한 공립박물관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1946년 개관) 1개소이다



[그림 2-1] 문화기반시설 공급(10년단위 공급량 기준)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이

나. 시설의 필수 조건의 충족(지방정부)과 중앙정부 지원의 연계를 통한 의미의 합의 (시설의 개념에 있어 추상성의 제거와 구체성의 확보)

'문화'라는 개념은 추상성과 다의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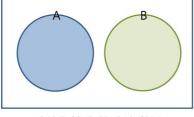
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의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시설의 근거법률은 대체로 시설의 기능과 공간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에 대한 문화시설의 관리·감독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유주가 스스로 문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문화시설로 인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시설로 편입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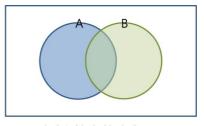
즉, '가'라는 지자체에서 지은 'A'라는 시설이 A는 아니지만 'A'라고 이름 붙일 수는 권한은 '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인 '나'는 A가 되는 시설을 'A'라고 부르는 '나'와 그러지 않은 '가'간의 개념적 불일치(별개)를 해소하기 위해 '나'가 '가'에게 이윤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개념적 불일치를 해소(조정)하고 있다.

참고

이는 'A'라는 물질이 A의 소유자인 '가'가 타인인 '나'가 제공하는 이윤적 동기에 의해 'A'라는 물질을 'B'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A'가 A임에도 불구하고 B, C, D...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A의 필수조건인 a가 B, C, D...의 필수조건인 b, c, d, ...가 유사성이 없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만약 'A'라는 물질의 필수조건인 a가 다른 물질의 필수조건인 b, c, d, ...간에 차별성을 획득할 수 없다면 이윤적 동기에 의해 'A'를 A라고 하는 제도는 운영되기 어려워진다.



시설유형간 차별성 확보



시설유형간 차별성 부족

문화시설의 근거법률은 각 시설의 고유목적시설의 보유 여부 및 면적의 충족, 해당시설 유형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인력의 보유 여부를 해당 시설의 필수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2-4〉문화기반시설별 근거 법률 제정

법렵 (제정연도)	제개정 시유 및 주요 내용	비고
도서관법 (1963)	국내외의 도서자료를 광범하게 수집 · 보존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서관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 -도서관의 종류 및 시설, 사서배치 기준 제시 -공공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제시 -국기등의 도서관 설치권장 -지자체에 대한 시설 및 설비에 요하는 경비 보조	도서관의 설립 권장 및 지원 성격
지방문회사업조 성법 (1965)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하여 행하는 지방문화사업을 보호 · 육성 지방문화사업자(문회원)의 정의 및 사업 지방문화사업자(문회원)의 신고 및 감독 지방문화사업자(문회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 원 및 관리 · 감독 병행
비영리법인의 설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 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설립허가 및 심사 -정관작성기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박물관법 (1984)	박물관의 건전한 육성 ·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그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 기술적인 지도를 행하고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 · 이용하고 나아가 문화 · 예술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 -박물관의 유형 -박물관의 수행 시업 -시설의 설치 · 운영 · 등록 기준 -학예지원의 배치 -경비의 보조 - 박물관협회 설립	
문화예술진흥법 전문개정 (1995)	증대하는 국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행정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창달의 기반을 다지며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제도를 개선 -문화예술회관의 정의 추가 ⁽³⁾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권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참조

^{13) 1995}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추가된 문화예술회관의 정의는 연주회 · 무용 · 연극등의 공연과 전시 · 학술행사 개최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표 2~5) 문화시설별 고유목적시설 및 법률상 시설기준

<u>l</u>	법률상의 시설기준	I	5. 시행 1985.7.16.) 2. 관련) 100점이상 3에 100제곱미터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 작업실 또는 준비실 학예적원 2인이상 시무실 또는 연구실 시무실 또는 연구실 지료실 · 도서실 · 강당중 1개시설이상	(행 1965.3.26.)
] 	開		박물관법 시행규칙(문화공보부령 제88호 시행 1985,7.16,) [별표1] 박물관의 설치 · 운영기준(제2조 관련)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6호, 시행 1965,3.26) [별표] 공공도서관시설가준
- - -	유 사 실	광연장 (무대 객석) 전시장 교육장	전사관	格고
	법률적 정의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4883호, 시행 1995.7.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문화예술화관"이라 함은 연주회 · 무용 · 연극등의 공연과 전시 · 학술행사 개최등 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박물관법(법률 제3775호, 시행 1985.7.1.) 제2조 (정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약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 · 역사 · 고고 · 민 속 · 예술 · 자연과학 · 산업등에 관한 자 료를 수집 · 보존 · 전시하고 이들을 조 사 · 연구하여 일반공중의 사회교육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중 자방 자타드체. 만법에 의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타의 법인이 설차하는 것으 로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을 말한다.	도사관법(법률 제1424호, 시행 1963;11,2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도사관이라 함은 도서·
	수	하 원	出	황

	<u>K</u>	받忠	2만상 4만 미만	10만마	20만마만	30만마	40만미만 50만미만	50만이상
	꾸	년간 증가 수	200년	300년	500년	1,000권	2,000권 3,000권	4,000권
	장	기본장서 년간 증기 수 수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500권 이상	2,200권 이상	2,800권 이상 3,300권 이상	5,000권 0상
장.		사무실	10%	면적이 12%	10%	면적이 9.3%	면적의 7.5% 면적의 16%	면적의 12.5%
법률상의 시설기준		돠			면 <u>적</u> 10%	면적이 10%	면적이 면적이 10%	면적의 12.5%
蹈	건물면적	정기 간행물실	면적이 1%	면 <u>점</u> 1%	면적이 5%	면적이 6.7%	면적의 7.5% 면적의 6%	면적이 5%
	컜	0동열람실	20석	30석	50석	70선	100석 150석	200석
		열람실	504	100석	200석	300선	400석	700석
		쩐	165m²	330m²	660m²	990m²	1,320m² 1,650m²	1,980m²
고유 목적 시설								
법률적 정의				기록 · 시청각자료 ·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	향토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이하 "도서관자 료"라 한다)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공중 또	는 특정인의 이용에 공하게 하여 그 조사·연 구·학습·교양·레크리에이션 기타 시호교	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설								

제2절

1990년대 이후 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 및 환경

1. '문화'의 개념 변화(협의의 '문예'에서 광의의 '문화'로)

1990년대는 초반 군사독재의 종식에 따른 민주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사상적 변화, 다양성, 다원주의의 조류가 대두되면서, 우리사회는 권위주의 와 결합된 집권의 기조에서 분권으로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권위주의시대에 통용되던 문화를 협의 개념인 문예로 간주하던 관점에서 광의의 개념인 삶의 양식적 총체로 보는 인류학적 관점의 문화로 문화의 개념이 확장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¹⁴⁾

^{14)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된 광의의 문화로의 문화개념을 확대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 이를 권력의 분권과정에서 생각해보면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과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제기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삶이라는 개인성의 회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갑영(1993)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여러 글과 토론회에서 확장된 문화개념에의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의 개념이 문예개념으로 축소에 기인, 김이수(1988)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중과 고급 간의 문화의 통합을 위한 자유주의적 문화정책의 필요, 한태선(1993)은 문화유산과 예술진흥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문화복지가 구현되는 시민사회의 문화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표 2-6〉 문화의 개념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문화정책논총 자료를 중심으로)

시기	제목 (저자)	논의 내용
문회정책논총 제1집 (1988.12.)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김이수)	엘리트 주의에 기인한 대중문화와 고급문회의 통합 필요 조정과 목표의 설정을 통한 구성주의적 문화정책보다 자유주의적 문화정책의 필요
문화정책논총 제5집 (1993,12.)	신한국 문회정책의 목표 : 시민문회의 창달 (한태선)	문화를 시회집단성원의 행위양식으로서 시회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는 지식이나 태도, 신념체계나 시고유형, 그리고 인간의 의욕과지적 창조물을 포함하는 의식의 체계(Williams, R의 견해)로 보고문화유신과 예술진흥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문화복자가 구현되는 시민시회 문화정책의 필요
문회정책논총 제5집 (1993.12.)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정갑영)	80년대 중반 이후에 여러 글과 토론회에서 확장된 문화개념에의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의 개념이 문예개념으로 축소에 기인 Edward B. Taylor의 총체론적 입장에서 정의한, '지식, 신앙, 예술, 법률, 관습 및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로서의 문화개념으로 볼 때 문화정책의 목표성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저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
		문화국가의 논의에 있어 광·협의 문화개념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음을 주장 문화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인 실천교제로서의 협의의 문화국가가 전통 적인 문화영역과 사회의 관념적 재생산 가능을 수행하고 문화의 민주 화, 문화의 생활화, 문화의 인진화 가능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진의 삶과 생활왕식의 총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주장
문회정책 논총 제6집 (1994.12.)	한국에 있어서 문화 국가 개념의 정립과 실현과제 (김수갑)	화정되 무하개년
문화정책논총 제7집 (1995,12,) *자료· 무하정채노	지방자치시대의 개 막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	지역문화정책을 다룸에 있어, 문체부의 업무영역 중심의 문화범주를 벗어나 테일러(Tylor,E, B., 1832~1917)의 총체적 개념의 문화 개념을 포괄할 필요 지역문화의 자치화, 개성화, 다양화 요구

*자료: 문화정책논총 참조

2. 법제도적 변화

독재정권의 종식 후 분권기조 속에서 법제도적인 변화가 진행된다. 문민 정부시기에는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이 이양되었 다. 뿌만 아니라 과거에 시행된 지방자치제가 통치 및 관리의 관점에서 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영역으로 정함으로써 분권의 목표가 시민 개인을 지향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시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의 도입으로 재정지출에 있어 중앙부처의 개입여지가 축소되고 지자체 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시기에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삶의 양 식적 총체로서 문화개념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군사정권 종식 후에 진행된 법제도적 변화의 방향은 집권에서 분권의 기조 속에서 권력의 지역분산과 재정 분권의 진행. 이러한 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개념의 확대로 보여진다.

가 지방자치제 시행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자 체가 위임받음으로서 주민의 요구에 따른 지역주도의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 하게 하였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에 제시되 고 같은 해 10월 헌법 개정.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재시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1991년 시·군·구 자치구 의원선거가, 같은 해 6월 시도의워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 방의회 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서 완전 한 민선자치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15)

지방자치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법률 제4004호, 시행 1988 5.1.)이 구 지방자치법(법률 제2437 호. 시행 1973.1.15.)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법이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 이행을 통한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된 법률에서의 목적은 지자체의 종류,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 관의 관계설정을 통해 지방자치행정 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도모로 두고 있음을 볼 때. 집권과 분권 간의 역학관 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있어서도 구법이 통치 및 관리의 관점에서 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영역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는 민과 관 간의 관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서 주민이 요구하 는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¹⁵⁾ 국가기록원 누리집(archives.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표 2-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후 비교

구분	지방자치법(법률 제2437호, 시행 1973.1.15.)	지방자치법(법률 제4004호, 시행 1988.5.1.)
쌰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집행과 일반사무처리 2.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 3.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 4.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 5. 증서와 공문서류의 보관 6. 법령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료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차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징수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시항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참조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로 지자체의 문화시설 건립에 있어 자율권이 강화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 7061호, 시행 2004.4.1.)은 지역간의 불균 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설치로 문화시설의 건립에 대 한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화됨으로써 중앙부처의 개입 여지가 축소되고 포괄보조에 따른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일반회계의 경우, 중앙부처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사업에 대한 검토가 가능했으나. 균특회계는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로 신청시 지역별 균특회계 한도액 의 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확보되고 문체부와 국토부 등의 중앙정부부처가 보조금의 통로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게 된다.16) 또한 포괄 보조로 인해 지자체는 자체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문화기본법(2014)과 지역문화진흥법(2014) 시행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삶의 양식적 총체 로서의 문화개념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개 념의 도입으로 과거 문예로 한정되어있던 문화의 개념이 일상의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질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다.

3. 새로운 문화시설 유형의 도입

문화의 개념 확장과 분권에 따른 제도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문화 시설이 출현하고 있다. 과거의 민족문화, 전통, 장르 기반의 문화시설이 아닌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주민을 향유자의 개념에서 주체적인 창작 자로 간주하는 문화시설 유형이 도입되었다. 문화의집(1996), 동사무소의

¹⁶⁾ 이로 인해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의 지급통로에 대한 선택권을 지니게 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집계 및 조정역할, 중앙정부의 개별 부처간의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주민자치센터 전환(1999), 생활문화센터(2014), 창작시설(1997)과 지역영 상미디어센터(2005)가 도입되었다.

가. 문화의집(1996) 도입¹⁷⁾

1) 도입배경

문화의집은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문민정부)에서 도입한 문화시설이다.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문화복지의 이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이념을 국민들의 삶속에 생활화한다는데 목표로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에서는 '선진형 문화생활'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제시하였는데 '선진형 문화생활 확산'에서 기본적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문화의집이 선정되었다.

2) 기능

우리나라 문화의집은 개인의 감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용자의 창작을 지원해주는 유럽식 문화의집 모델과 문화적인 환경에서의 생활을 체험시키고 온갖 문화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을 제공하는 미국의 커뮤니티센터 등의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변용하여 개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문화의집은 지역민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소규모 문화활동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창작 및 문화체험, 예술교육 등의 권리를 제공하는 창의적 문화공간으로서 수준높은 예술과 생활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민주화와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화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기능을 가지고 있다.

¹⁷⁾ 문화체육관광부(2006)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3) 시설 조성 특성

문화의집은 시행초기 당시 비워진 공공시설(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진행 되었다. 이는 당시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 공간의 재활용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데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주민자치를 실현할 만한 공간이 필요한 상황과 시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화향수 기회의 중앙집중화에 대한 반성이자 문화향수기회 진작 과 문화생산민주주의 실현 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전국지역에서 폭넓게 건립되었다.

문화의집의 시설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건에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당시 인터넷 및 개인 PC의 저변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구분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	시설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6747호, 시행 2000,3,4,)	도서 비디오테이프 및·CD 각 300점 이상	1.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인터넷 부스 (PC 4대 이상) - 비디오 부스 (VTR 4대 이상) - CD 부스 (CD 플레이어 4대 이상 - 문화관람실 (빔 프로젝트 1대) - 문화창작실 (공방) -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 문화시랑방 (전통문화시랑방) 2. 화재·도난방지시설

〈표 2-8〉 문화의집 시설 기준

4) 정책 추이

2000년에 문화의집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 률 제5928호, 시행 2000 2.9.) 제5조(적용범위), 제19조(유휴공간 활용)에 부여되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 law go kr) 참조

〈표 2-9〉문화의집의 법률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5928호, 시행 2000,2,9,)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자료관 · 사료관 · 유물관 · 전시장 · 전시관 · 향토관 · 교육관 · 문서관 · 기념 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예술관·문화의집·이외전시공원 및 이와 유시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사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9조(유휴공간 활용) (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집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집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공간을 대여요청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 law go kr) 참조

'문화의집'은 건립비에 대한 국고보조와 더불어 설립 5년까지 운영예산 이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지워되었으나. 2004년부터 매칭펀드로 지원 되던 운영예산이 지자체 소관으로 이양되고 2005년부터 설립 및 조성에 관한 정책도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1999)¹⁸⁾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 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 례 준칙 제1조와 제2조)

김대중 정부의 1997년 대선공약 사항으로 읍면동의 기능 전환 등 지방행 정구조 개편 검토가 작은 정부 구현과 함께 과제로 제시되었다. 1999년 2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3천7백18개 읍면 동사무소를 2001년까지 단계 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민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주민여가활용공간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키로 하고 2008년에 이르러서는 전

¹⁸⁾ 김주환(2008)

국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사무소가 모두 지방자치센터로 전환되었다.

다 생활문화센터 도입(2014)19)

1) 추진경위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부터 국정과제 사업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지 역주민의 문화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²⁰⁾ 2013년 「지역문화진흥법」제정을 통해 생활문화 지원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었고 2014년 정부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

2) 생활문화센터의 개념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중 '생활문화시설²¹)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기존 문화시설이 '문화의 민주화' 관점에서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제공 하는 관람형-강좌형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반해. 생활문화센터는 '문화 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이 아마추어 예술가로서 스스로 학습하고 창작하 며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중심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Bottom-Up 방식의 운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운영인 력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¹⁹⁾ 문화체육관광부(2017c)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²⁰⁾ 정광열(2016: 47)

^{21) &#}x27;생활문화시설'은 "생활문화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시설에 타부처 소관의 생활친화적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시설이 활용면에서 생활친화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생활문화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2-10)	생활문화의	개년
١ш	2 10/	O 글 正 되 ᅴ	/

관점	내용 및 특성	
	• 전문예술/창작자가 아닌 일반시민/아마추어의 문화활동	
행위자 관점	 문화향유, 문화학교, 문화교육 등 	
	• 비전문가의 창작활동	
자크라 기자	• 예술적 · 심미적 개념에서 확장된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활동	
장르적 관점	• 전통생활문화, 기정생활문화, 정서적 취미활동 등	
고가/시기저 과저	• 노동시간과 분리된 여가활동으로서가 이닌 일상속, 생활속의 문화활동	
공간/시간적 관점	• 전문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 등 장소 여부는 기준이 아님	
	• 문화활동의 방식에서 주체적 활동이 기준	
활동의 방식 관점	• 창작활동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문화활동 기획과 과정의 주체적 참여가 기준	
	• 수동적인 문화강좌 등은 문화관람 등의 관점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제외	

^{*}자료: 정광렬(2017) 참조

〈표 2-11〉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비교

구분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시행연도	1996년	2014년
주요가능	국민문회복지 증진,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 극복,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별 거점문화 센터 조성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 및 발표 공간 제공 주민커뮤니티 공간, 공연장 제공을 통해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
공간규모	100평 내외, 소규모 유휴공간 사용, 주민들의 생활공간 인접	센터 유형별로 공간 규모 상이
공간구성	문화관람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 사랑방, 정보자료실	마주침 공간 공연장 연습실 5이리 등을 7본 으로 함
특징	개인위주의 공간이 많음 공동체 공간이 작음	동이리 위주의 공간이 많음 마주침 공간과 같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 있음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운영	전문운영자 및 기획자 부재, 공무원 등이 시설 관리	지자체, 재단, 주민자치운영회 등
주요시업	문화강좌	지역 동이리 공간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제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c: 16) 참조

3) 시설조성 특성

생활문화센터는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및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을 유 도하고 개축 또는 증축된 시설을 생활문화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

〈표 2-12〉생활문화센터 운영 시설 유형 현황(2017,12,15, 기준)

구분		개소	생활문화센터 시례
기존	주민센터	11	범일 생활문화센터(부산 동구), 겸백 생활문화센터(전남 보성군) 외
	문예회관	6	대덕문화전당 대덕생활문화센터(대구 남구), 예주 생활문화센터 (경북 영덕군) 외
	문화의집	9	농성문회의집 생활문화센터(광주 서구), 우이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전북 전주시)
	문화원	5	광산문회원 광산생활문화센터(광주 광산구), 수원문화원 수원생활문 화센터(경기 수원시)
	미술관	1	대전시립미술관 생활문회센터(대전 서구)
	그 외 문화시설	9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미당(인천 중구/인천이트플랫폼), 학산 생활 문화센터 미당(인천 남구/학산 소극장), 화천 생활문화센터(강원도 화천군/화천생태영상센터) 외
	기타	5	신안미을 생활문화센터(경남 밀양시/ 복지회관) 외
	합계	46	
	폐교	6	경기 생활문화센터 다시리(경기 수원시),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경남 거창군) 외
	목욕탕	2	두송 생활문화센터(부산 사하구) 외
	문화시설	10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부산 수영구/문화센터), 중구 생활문화센터 (울산 중구/ 전통공예관) 외
	모텔	1	777 생활문화센터(경기 양주시)
0 -	보건지소	2	서재행복 생활문화센터(대구 달성군), 상남면보건지소(경남 밀양시)
유휴	고보히지	1	진달래 생활문화센터(인천 연수구)
	창고	2	청주 생활문화센터(충북 청주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전북 정읍시)
	임시역사	1	보정역 생활문회센터(경기 용인시)
	정추주	1	화성시 생활문화센터(경기 화성시)
	기타	19	은평 생활문화센터(서울시 은평구/일반주택), 좌천 생활문화센터 (부산 동구/(구)새미을금고) 외
	합계	4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c)참조

생활문화센터는 대상을 수용하는 지역의 범위(시군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된다22).

²²⁾ 지역문화진흥원(2017)에서는 역할을 기준으로 거점형과 생활권형을 구분하고 있다.

구분	내용		
거점형 생 활문 화센터	 시군구 단위로 조성 생활권형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창작 및 발표 등을 위한 공간 지원 생활문화시설 네트워크 허브 소형 문예회관 수준의 규모 		
생활권형 생 활문 화센터	 읍면동 단위로 조성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과 자율적인 문화활동 및 생활문화동호회 형성 지원 기초 생활문화 접점 공간 주민센터 수준의 규모 		

〈표 2-13〉생활문화시설의 역할별 유형 구분

라. 창작시설(1997)과 미디어센터(2005)의 도입

1) 창작시설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창작공간 지원이 진행된 것으로 1997년 한국문 화예술진흥원에서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시각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지 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계기로 참여정부 들어 창작스튜디오 정책이 추진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게 된다. 근래에는 도시계획과 도시 디자인건축 분야에서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의 맥락에서 창작시설이 다뤄지고 있고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문체부외의 타부처에서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박신의, 2013b)

1980년대 프랑스에서 자끄 랑(Jack Lang)의 문화정책방향이 예술의 일 상화와 예술에 의한 지역발전과 경제적 활성화 등의 효과에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에서의 창작공간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의 생산성이 극도로 저하된 유휴시설에 있어, 창작시설로 전환하여 생산성(지역의 부가가치)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박신의, 2013a)

지역을 선도하는 중심산업의 쇠퇴의 대안으로서 창작시설이 활용되고

^{*}자료: 지역문화진흥원(2017) 참조

있다. 예를들어,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1.78㎢ 일원에 대해 창동 예술촌과 부림 창작공예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는데 사업의 추진결과 유 동인구는 사업 시행전 13.2만여명에서 시행 후 30.8만여명으로 132.6% 증가하였으며 상점매출액 역시 395억원에서 573억원으로 45% 증가하였 다. 23)



[그림 2-2] 창동예술촌 현황도

2) 미디어센터

초기의 '보는 미디어'에서는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하 는 수용자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미디어 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현재는 '참여

²³⁾ MK부동산, "도시재생의 힘...창원 구도심 상가 매출 45% 껑충", 2016.11.23

형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수용자가 능동적인 형태의 이용자이자 생산자가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미디어센터는 영상정보시대의 새로운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 접근과 문화향유와 창조의 기회를 위해 영상 기자재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며, 전문가에서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미디어·문화 센터이다²⁴⁾.

문체부 및 영진위와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문체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지원사업이 2005년,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05년 설립되었다.

4.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규정

문화의집(1996),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1999), 생활문화센터 (2014), 창작시설(1997)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2005)가 도입되는 상황과 더불어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생활문화시설까지 문화시설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체부 소관의 시설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외에도 교육부 소관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행안부 소관의 지역자치센터와 마을회관이 문화시설의 범주에 포함이 되었고, 문체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생활문화시설의 유형을 고시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상황에 맞게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되었다.

²⁴⁾ 출처: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누리집(krmedia org)

〈표 2-14〉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구분	상세분류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자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창작공간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바목 및 사목에	지역자치센터(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을회관(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자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시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참조

지역문화기반시설 수급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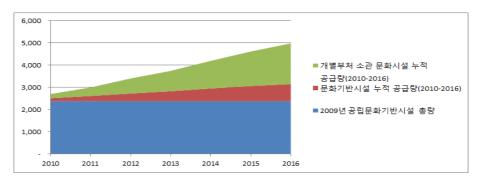
문화의 개념 확대와 분권의 기조는 문화시설 간의 차별성이 적어지고 문체 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유인을 줄어들게 하여, 전체적인 문화영역의 확대 속에서 문체부의 실효적 정책범위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문화의 개념 확대와 지방으로의 분권 상황이 문화시설의 수급에 미친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체부 문화기반 시설총람에 근거한 문화시설(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 원. 문화의집)의 공급과 문체부 및 타부처에서 공급한 광의의 문화시설의 공급 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이후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공급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2016년말 기준으로 전체적인 문화시설 공급총량은 4,983개소로 2010년 2,378개소의 2배 수준이 되었음이 발견되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립문	2009년 화기반시설 총량	2,378						
연간	문화기반시설	132,2	102,2	112,2	101,2	125.2	110.2	85.2
증가량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189.3	195.5	292.0	241.0	324.8	313,5	280.2
	문화기반시설	132,2	234,4	346,6	447.8	573	683,2	768.4
누적 증가량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189,3	384.74	676.74	917.74	1,242.49	1,555.97	1,836.15
	계	321,5	619.1	1023,3	1365.5	1815.5	2239,2	2604,6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ラ ー こ ラ ー こ ラ ー ラ ー ラ ー ラ ー ラ ー ラ ー ラ ー	2,699	2,997	3,401	3,744	4,193	4,617	4,983

〈표 3-1〉문화시설 공급량 추이



지자체의 문화예산비중이 일정한 상황에서 문화시설의 증가가 진행될 경 우, 증가되는 문화시설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운영여력) 인지를 파악한 결과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당 운영비는 문화기반시설 운영비 의 2.185%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표 3-2〉 문화시설 운영비 비교

구분	문화기반시설 관당 운영비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관당 운영비
산식	BUc/2,378	BUc(0,34 - 768,4/2,378)/1836,15
비율	100%	2,185%

제1절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문화기반시설 수급 현황

1. 대상범위의 설정

본 절에서 문화기반시설총람의 공립문화기반시설은 지자체 소속 공공도 서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을 적용하였 다. 교육청 소관의 시설은 일반대중에게 개방이 제한되는 시설로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시설의 건립과 소유 주체가 지자체인 지자체소속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을 우선 적용하였다. 문화기 반시설총람에 제시되고 있는 지방문화원과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방문화 원이 그 기원이 시설이라기보다는 단체에 가까우나²⁵⁾. 지방문화원이 정책 전달체계상에서 최종 이용자와의 접촉점(공간)으로 기능하고 문화예술진 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에 포함하였다. 26)

²⁵⁾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 향토문화 보존의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되었으며 1965년 지방문화사 업조성법의 제정으로 공적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²⁶⁾ 조사과정에서 다수의 지방문화원의 주소가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타 문화기반시설과 주소가 같은 경우 73개소, 생활문화센터로 지정된 지방문화원이 14개소 관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원을 포함시켜 수급현황을 조사한 이유는 지역문화원이 지니고 역할의 차별성(지역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고유시업과 설립인가 기준, 유사명 칭의 사용금지 등)을 고려할 때 중복성이 적기 때문이다.

문화기반시설총람 분류 적용여부 적용/미적용 사유 시설유형 설립주체 국립도서관 국가단위의 기관 미션 및 성격 X 처지지 0 공립의 성격(건립 및 소유 주체)에 부합 도서관 공공도 교육청 수요대상의 한정성 및 불일치 Χ 서관 사립 Χ 새립 국가단위의 기관 미션 및 성격 국립박물관 Χ 공립의 성격(건립 및 소유 주체)에 부합 공립박물관 0 박물관 새립 시립박물관 X 대학박물관 수요대상의 한정성 및 불일치 Χ 국립미술관 국가단위의 기관 미션 및 성격 Χ 미술관 공립미술관 0 공립의 성격(건립 및 소유 주체)에 부합 사립미술관 정보 접근성 부족 Χ 문예회관 0 공립의 성격(건립 및 소유 주체)에 부합 '지방문회원진흥법'에 근거한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 지방문화원 0 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 포함 공립의 성격(건립 및 소유 주체)에 부합 문화의집 0 시설등록기준 보유 지역문화재단 Χ 시설보다는 기관의 성격

〈표 3-3〉본 절에서의 공립문화기반시설 적용

2. 공급추이(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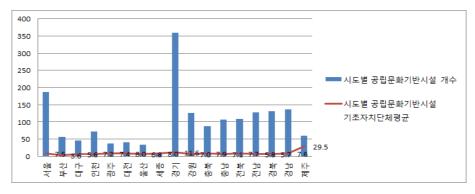
2010년 이후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문화기반시설 유형의 증가 추이는 다음과 같다. 문화기반시설총람 상의 시설은 연간 70개소 이내가 개관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공립)과 같은 소규모 시설을 포함시킬 경우 약 100여개 소가 개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등록공립박물관	18	20	16	18	10	13	6
등록공립미술관	4	5	5	2	2	3	1
문예회관	12	12	10	6	6	8	3
공공도서관	60	27	43	37	68	48	35
지방문화원	1	1	0	0	0	0	0
문화의집	0	0	0	0	1	0	2
소계	94	64	74	63	86	72	45
작은도서관(공립)	38,2	38,2	38,2	38,2	38,2	38.2	38,2
계	133,3	102,2	112,2	101,2	125,2	110,2	85,2

〈표 3-4〉 공립문화기반시설 연간 공급량 추이

3. 전체 공급량

2016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립문화기반시설은 1,720개소로 기초자치 단체(시·군·구²7))당 7.5개가 운영되고 있다. 광역시도 내 공립문화기반시설의 총 개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60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서울특별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시 단위에서는 10.9개, 군 단위에서는 5.1개, 구 단위에서는 6.4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3-1]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총개수 및 시도내 기초지자체 평균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누리집(www.libsta.go.kr) 참조

^{**} 작은도서관(공립)은 평균값 적용(2009년 1,135, 2016년 1,403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참조

²⁷⁾ 문체부 문화기반시설총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고 있어, 시군구 수량은 행정시, 자치구, 군과 더불어 행정시가 아닌 시를 포함하여 산정된 229개소를 적용하였다.

〈표 3-5〉 시도별 공립문화기반시설 분포

(단위: 개소)

구분 (기초자치 단체 수)	지자체 소속 공공도사관	공립 박물관	공립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계	기초자치 단체당 평균
계(229)	758	342	56	236	228	100	1720	7.5
서울(25)	119	14	4	20	25	5	187	7.5
부산(16)	24	7	1	11	14	0	57	3.6
대구(8)	18	6	2	11	8	0	45	5.6
인천(10)	39	13	2	9	8	1	72	7.2
광주(5)	16	3	2	7	5	4	37	7.4
대전(5)	22	4	2	4	5	3	40	8.0
울산(5)	13	7	0	5	5	4	34	6.8
세종(1)	4	2	0	1	1	0	8	8.0
경기(31)	229	47	9	35	31	9	360	11.6
강원(18)	31	48	3	20	18	6	126	7.0
충북(11)	29	25	3	12	11	7	87	7.9
충남(15)	40	24	2	18	16	6	106	7.1
전북(14)	39	23	3	15	14	12	106	7.6
전남(22)	43	33	7	19	22	4	128	5.8
경북(23)	36	36	5	25	23	6	131	5.7
경남(18)	41	36	4	21	20	15	137	7.6
제주(2)	15	14	7	3	2	18	59	2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참조

인구밀도 대비 문화기반시설 수(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를 적 용한 결과 공립문화기반시설 수는 평균 3.3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 단위 에서는 평균 3.46개, 군 단위 평균 9.31개, 구 단위 평균 1.9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인구 십만 명당 가장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약 9.20개이고, 다음으로 강원도 8.12개, 전라남도 6.72 개 순이다.

/ ㅍ	3-6/	시구그병	이그10마며다	공립문화기반시설	브ㅍ
\ _	3 ⁻ 0/	시正구글	ひていせるる	승립군외기단시골	ᅲ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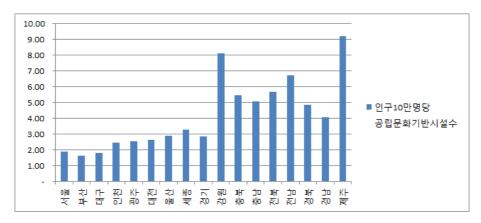
구분	공립문화기반시설 수	공립문화기반시설 수 인구수	
계	1720	51,696,216	3,33
시	863	24,933,3541	3,46
군	413	4,435,617	9.31
구	444	22,327,248	1.9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누리집(www.libsta.go.kr) 참조

〈표 3-7〉 시도별 인구10만명당 공립문화기반시설 수

구분	지자체소속 공공도서관	공립 박물관	공립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계	주민등록 인구	인구10만명 당 공립문 화 기반시설 수
계	758	342	56	236	228	100	1720	51,696,216	3,33
서울	119	14	4	20	25	5	187	9,930,616	1,88
부산	24	7	1	11	14	0	57	3,498,529	1,63
대구	18	6	2	11	8	0	45	2,484,557	1,81
인천	39	13	2	9	8	1	72	2,943,069	2,45
광주	16	3	2	7	5	4	37	1,469,214	2,52
대전	22	4	2	4	5	3	40	1,514,370	2,64
울산	13	7	0	5	5	4	34	1,172,304	2,90
세종	4	2	0	1	1	0	8	243,048	3,29
경기	229	47	9	35	31	9	360	12,716,780	2,83
강원	31	48	3	20	18	6	126	1,550,806	8,12
충북	29	25	3	12	11	7	87	1,591,625	5.47
충남	40	24	2	18	16	6	106	2,096,727	5,06
전북	39	23	3	15	14	12	106	1,864,791	5,68
전남	43	33	7	19	22	4	128	1,903,914	6.72
경북	36	36	5	25	23	6	131	2,700,398	4,85
경남	41	36	4	21	20	15	137	3,373,871	4.06
제주	15	14	7	3	2	18	59	641,597	9,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누리집(www.libsta.go.kr) 참조



[그림 3-2]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공립문화기반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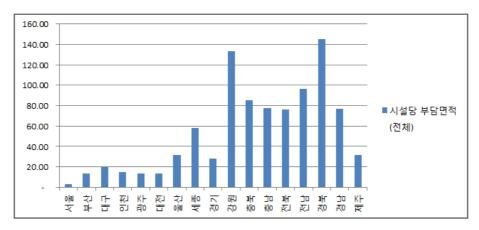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누리집(www.libsta.go.kr) 참조

시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립문화기반시설이 부담하여야 하는 면적은 평균 58.34k㎡로 나타났고,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강원과 경북은 133.55k㎡, 145.28k㎡로 나타났다.

〈표 3-8〉 시도별 공립문화기반시설의 부담 범위

구분	면적(km²)	공립문화기반시설수	시설당 부담범위 면적 (㎢)
계	100,339.49	1720	58,34
서울	605,20	187	3,24
부산	769.89	57	13,51
대구	883,56	45	19.63
인천	1,062,60	72	14.76
광주	501.24	37	13,55
대전	539,35	40	13,48
울산	1,060,79	34	31,20
세종	464 <u>.</u> 87	8	58,11
경기	10,183.46	360	28,29
강원	16,827.12	126	133,55
충북	7,407.29	87	85.14
충남	8,226,14	106	77.61
전북	8,069.05	106	76.12
전남	12,318.79	128	96,24
경북	19,031.42	131	145.28
경남	10,539.56	137	76.93
제주	1,849.15	59	31,3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누리집(www.libsta.go.kr) 참조



[그림 3-3] 시도별 공립문화기반시설당 부담면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b),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누리집(www.libsta.go.kr) 참조

제2절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의 공급현황 분석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²⁸⁾에서 집계하고 있는 부처별 정책사업 중 문화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집계하고 있는 각 부처별 건축 도시분야 정 책사업²⁹⁾ 중 문화시설의 건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유형은 문체 부의 시설 및 도시 분야 사업, 타 부처의 시설 및 도시 분야의 정책사업 중 문화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정하였다.

문체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공간문 화 개선사업(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문화마 을)조성 시법사업,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 농림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6 년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행안부는 마을공방육 성사업이 적용되었다. 이 외에도 부처협동사업으로 도시재생 선도/일반지 역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30)

²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의 관리 필요성 증가로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국내 건축도시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를 구축ㆍ제공하고 있다.

²⁹⁾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에서 제공하는 건축·도시분야 정책사업 현황은 부록 참고

³⁰⁾ 문체부 소관사업은 공립시설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유형을 선정하였고 타 부처 소관사업의 경우 정보접근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타 부처 소관 문화시설의 공급량의 유의미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문체부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조성사업의 경우, 2004년에서 2007년 동안 74개소가 조성되었으나, 신청기관이 지자체, 지역문화원, 임의단체, 개인 등으로 다양하여 공립기관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 본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하였고, 타부처 소관의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재 생/혁신)사업, 새뜰마을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성장촉진지역, 특수상

구분	문체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부처협동
문화시설 건립 수반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시업 작은영화관조성 지원사업 작은영화관조성 지원사업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 목화지역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정시업	도시재생 뉴 딜사업도시활력증 진지역사업	 일반농산어 촌개발사업 2016년 창 조미을 시범 조성사업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 마을공방육 성시업	• 도시재생 선 도/일반지 역 사업

〈표 3-9〉 부처별 문화시설 수반사업

2. 부처별 정책사업 유형별 문화시설 공급현황

가. 문체부 소관 사업

1)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2018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110개소의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31개소가 시설 조성 중에 있다.31)

황지역,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등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보접근성 등의 문제로 제외하였다. 31)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후 지정되는 방식으로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시설과 총계를 매기는 과정에서 중복계산의 소지가 발생한다.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과의 기능상의 중복이 없다면 별도로 집계하는 것이 맞으나 기능상의 중복이 있을 경우, 시설상의 중복을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의 44개 시설은 생활문화센터 중 광의의 문화개념에 따른 문화시설과 시설상의 중복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집계되고 있는 타 시설과 명칭 및 성격이 다르며 문화의집도 2010년 이후 공급량이 미미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역	셔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개소수	3	14	7	9	4	3
지역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개소수	2	1	12	8	3	6
지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수	13	9	6	8	3	110

〈표 3-10〉 광역지자체별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016년 지특회계로 변환되 어 추진되었고 예산은 60억~130억원에서 책정되고 있다.

〈표 3-11〉문체부의 생활문화센터 건립예산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계정	일반회계	일반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금액	11,000백만원	12,000백만원	12,920백만원	6,242백만원	8,36백만원
개소수	확인불가(32)	확인불기(33)	29개소	21개소	14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생활문화센터 중 중복 집계 가능 시설 현황(2017.12.15. 기준)

	구분	개소	생활문화센터 시례
	주민센터 11		범일 생활문화선터(부산 동구), 겸백 생활문화선터(전남 보성군) 외
	문화의집	9	농성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광주 서구),
	도지되다	9	우이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전북 전주시)
기존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인천 중구/인천이트플랫폼), 학산 생활문화센터
/ 	그 외 문화시설		미당(인천 남구/학산 소극장), 회천 생활문화센터(강원도 회천군/회천생태영
			상센터) 외
	기타	5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경남 밀양시/ 복지회관) 외
	합계	34	
	ㅁ됬니서	10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부산 수영구/문화센터),
유휴	유휴 문화시설		중구 생활문화센터(울산 중구/ 전통공예관) 외
	합계	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c) 참조

^{*}자료: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rcda.or.kr/data/myvill_new.asp) (2018.05.27. 검색 기준)

³²⁾ AURUM을 통해 확인되는 2014년 선정된 수량은 10개소임

³³⁾ AURUM을 통해 확인되는 2015년 선정된 수량은 36개소임

2) 작은 영화관 조성 지원사업

2014~2016년 기간 동안 선정된 사업 중 31개소가 현재 운영 중인 것으 로 파악되다

〈표 3-12〉 광역지자체별 작은영화관 공급현황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울산	계
2014		1	2		2	2		1		8
2015			1	1		2	2	1	1	8
2016	1		4	2	2	3	3			15

^{*}자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누리집(www.aurum.re.kr) 참조

작은영화관의 조성 예산은 지특회계(광특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예 산은 30억~50억원에서 책정되고 있다.

〈표 3-13〉 작은영화관 건립예산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계정	광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금액	3,800백만원	3,800백만원	5,575백만원	4,915백만원	5,043백만원
개소수	10개소 ³⁴⁾	확인불기(35)	확인불가(36)	확인불가	확인불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3)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은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유휴공간(간이역, 버스터미널, 소규모 유휴공간 등)을 문화와 공공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문화적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적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도는 선정시점 기준

³⁴⁾ AURUM을 통해 확인되는 2014년 선정된 수량은 8개소임

³⁵⁾ AURUM을 통해 확인되는 2015년 선정된 수량은 8개소임

³⁶⁾ AURUM을 통해 확인되는 2016년 선정된 수량은 16개소임

〈표 3-14〉 연도별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대상사업

구분	대상시업	계
2014	 전라남도 무안 몽탄역 강원도 정선 시외버스 터미널 충청북도 영동 황긴버스터미널 충청북도 충주 (구)여성회관 광주 - 구)광주극장 관사 제주 추자도 어촌계 냉동창고 	6
2013	 울산 - 공업탑지하보도 강원도 영월 운일분교 충청북도 증평 증평역 전리북도 진안 구 마령복지회관 전리남도 보성군 득량면 역전길 경상북도 봉화 분천역 제주도 애월읍 상기리 창고 	7
2012	경기도 양주시 송추역경상북도 영주시 희방사역	2
2011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역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역 경상북도 김천시 직지사역 	4

^{*}자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누리집(www.aurum.re.kr) 참조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의 조성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으 며 예산은 6억원 정도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3-15〉문화체육관광부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예산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예산계정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금액(백만원)	76037)	56038)	600	2,752 ³⁹⁾
개소수	간이역 4개소	간이역 2개소	간이역 2개소 유휴공간 5개소	간이역 1개소 바스타기널 2개소 유휴공간 3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참조

^{**}연도는 선정시점 기준

³⁷⁾ 디자인 컨설팅 및 솔루션 전체 예산으로 이 중에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³⁸⁾ 디자인 컨설팅 및 솔루션 전체 예산으로 이 중에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4)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한 문화도시와 문화마을을 포함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20개소의 문화도시와 32개소40)의 문화마 을이 운영되고 있다.

〈표 3-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추진 현황(2017년말 기준)

7 H		지자체명	지원규	모(개)	국비지원액	=
구 분	광 역	기 초	문화도시	문화마을	(백만원)	비고
1	нль	수영구	_	1	80	
2	부산	해운대구	_	1	80	
3		본청	1		300	
4	대구	중구	_	2	160	계속1/신규1
5		달성군	_	1	80	
6	인천	부평구	1	_	270	
7	울산	본청	_	1	80	
8	굴인	중구	1	_	300	신규
9		성남시	_	1	80	
10		양평군	_	1	80	
11		수원시	_	2	240	
12	경기	파주시	1	1	80	
13	6/1	부천시	1	_	90	
14		가평군	1	_	180	
15		시흥시	_	1	40	신규
16		포천시	_	1	40	신규
17		원주시	1	_	300	
18	강원	강릉시	_	1	200	
19		평창군	-	1	200	
20		청주시	1	_	300	
21	충북	영동군	_	1	80	
22		충주시	-	1	80	신규
23		공주시	_	_	_	완료
24	충남	부여군	-	_	_	완료
25		천안시	1	-	300	

³⁹⁾ 디자인 컨설팅 및 솔루션 전체 예산으로 이 중에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단, 상위 계정인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의 사업내용에 있어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2014년까지 사업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도 디자인 컨설팅 및 솔루션 사업은 유지되나 사회취약시설(소년원, 다문화센터 등)의 문화적 공간 조성으로 변화되었다.

7 H		지자체명	지원규	모(개)	국비지원액	ul ¬
구 분	광 역	기 초	문화도시	문화마을	(백만원)	비고
26		당진시	_	1	80	
27		홍성군	_	1	306	
28		예산군	_	1	80	
29		서산시	1	_	300	
30		군산시	1	_	120	
31	전북	남원시	1	_	300	
32	신독	진안군	_	1	80	
33		익산시	1	_	290	신규
34		여수시	1	1	380	
35		나주시	1	_	300	
36	전남	담양군	1	-	300	
37		광양시	1	_	300	신규
38		해남군	_	1	80	신규
39		구미시	1	-	300	
40		포항시	1	_	300	
41		영천시	_	1	80	
42	경북	문경시	_	1	80	
43		영양군	_	1	80	
44		고령군	_	1	80	
45		성주군	_	1	80	
46	경남	양산시	_	1	80	
47	6 □	하동군	_	1	80	
48	ᅰᄌ	서귀포	1	_	300	
49	제주	제주시	1	1	380	
50	세종	세종	_	1	80	
	합	계	20	32	8,476	

문화특화지역의 조성 예산은 지특(광특)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연간 최대 예산은 80억원 정도에서 책정되었다.

〈표 3-17〉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예산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신	계정	광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금액	금액 문화P을 400		460 2 340	2,740	6,506	5,955
(백만원)	문화도시	400	2,340	4,000	1,210	2,3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⁴⁰⁾ 충청남도 공주시 및 부여시의 문화마을 사업이 2016년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생성된 문화마을의 수량은 34개가 된다.

5)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은 노후한 유휴공간의 문화공간으로의 리노베이 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운영 콘텐츠, 문화예술공간 기획 및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쉽게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표 3-18〉 연도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대상사업

구분	대상시업	계
201741)	 울산 (구)세창냉동 세종 조치원 정수장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일대 충청북도 청주시 동부창고 전라북도 남원시 kbs 남원 방송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역사 창고 	6
2016	 대구 중구 구 KT&G 연초제조창 사택 경기도 수원시 경기 서울대 농생대(서둔동 청년문화공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산업1단지 폐수처리장 전리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4386 전리북도 완주군 (구)잠종장 전리남도 담양군 해동술공장 	6
2015	영주시 연초제조창경기도 파주시 캠프그레이브스제주도 제주대병원	3
2014	 인천 옹진군 (구)백령병원 인천 인천이트플랫폼 광주 광산구 소촌동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 시공공구상가 지원동 42동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지원화수시설 내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소각장 경기도 안산시 시회반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농공 강원도 정선군 삼탄이트미인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전라남도 담양군 관방제림 주변 남송창고, 죽제품 가공공장 	11

^{*} 자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누리집(www.aurum.re.kr) 참조

^{**} 연도는 선정시점 기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조성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급 되었으나 2015년부터 지특회계로 지급되고 있으며 연간 최대 예산은 125 억원 정도에서 책정되었다.

〈표 3-19〉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예산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계정	일반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금액(백만원)	12,500	11,875	10,972	10,116	3,9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6) 문학관

문학관 건립은 지특회계의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다.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시설은 연간 1~4개 소이나 있다.

〈표 3-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 예산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계정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금액(백만원)	2,202	955	3,351	2,565	1,740
개소수(신규기준)	3	1	4	2	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한국문학관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문학관의 개관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42)

^{41) 2017}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에서는 경기, 부산, 광양, 남원, 청주, 조치원으로 사업지가 정해져 있다.

⁴²⁾ 단 한국문학관협회에 2015년 이후 등록된 공립 문학관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관연도	시설명	지역
	월하이태극문학관	강원
2010	노작홍사용문학관	경기
	순천문학관	전남
2011	박인환문학관	강원
	석정문학관	전북
	강진시문학파기념관	전남
2012	전북문학관	전북
	대전문학관	대전
2014	울산	

〈표 3-21〉 한국문학관협회 회원관 개관연도 현황

7) 기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2011년 기간동안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5군데 지역근대산업유산을 공연 전시, 테마체험장, 예술창 작공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의 기본 적인 유휴공간 재생 프레임이 이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한국문학관협회 누리집(www.munhakwan.com) 참조

^{**}남해유배문학관(경남), 한국근대문학관(인천)은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제외

〈표 3-22〉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 개요

시업명	포천시업
총시업비	5,300백만원(국비 : 2,650백만원/지방비 : 2,650백만원)
위치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82(포천아트밸리 내 시설 및 부지)
사업규모	부지면적 : 150,000㎡/연면적 2,184㎡
주요사업	교육 · 전시센터 건립(창작스튜디오 4실 포함)/문화예술카페 리모델링/관람(돌문화홍보전시관) · 체험장(생태체험장) · 편의시설 확충/시설활용프로그램 운영
시업명	0산사업
총시업비	5,028백만원(국비 : 2,514백만원/지방비 : 2,514백만원)
위치	이산시 도고면 신언리 94-5번지 일원(구 도고온천역 일대)
사업규모	농협창고(부지 : 1790㎡/건물 2개동 : 660㎡) 도고온청역(31,141㎡) 및 선장간이역(2,000㎡) 장향선 폐철로(3km)
주요시업	선도농협창고 2개동 문화공간조성(공연 및 전시 등) 조형예술랜드 신축(기획/상설전시, 예술창작공방) 공연박물관, 기치전시장 경관조성 - 폐철도 산책로 조성 등
시업명	군산시업
총시업비	10,000백만원(국비 : 5,000백만원/지방비 : 5,000백만원)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내항일원(근대문화자구 일원)
시업규모	부지면적 11,550m², 연면적 2,527m²
주요사업	조선은행(쌀 및 근대사 전시관)/나가사키 18은행(건축박물관)/미즈상사 전시공간(고서적 전시) 리모델링 사업 대한통운창고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410000 000 4220 VIII MISO 100 70VII
사업명	신안시업
시업명 총시업비	
	신안사업
총시업비	신안사업 3,200백만원(국비 : 1,600만원/지방비 : 1,600백만원)
총시업비 위치	신안시업 3,200백만원(국비 : 1,600만원/지방비 : 1,600백만원)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태평염전 일원
총시업비 위치 시업규모	신안시업 3,200백만원(국비 : 1,600만원/지방비 : 1,600백만원)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태평염전 일원 66,564㎡/연면적 737.8㎡(태평염전 면적 : 6,430,000㎡) 염전전망대/염생식물관찰원/염전체험장 및 전통소금체험장/소금창고
총시업비 위치 시업규모 주요시업	신안시업 3,200백만원(국비: 1,600만원/지방비: 1,600백만원)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태평염전 일원 66,564㎡/연면적 737.8㎡(태평염전 면적: 6,430,000㎡) 염전전망대/염생식물관찰원/염전체험장 및 전통소금체험장/소금창고리모델링/소금공원 조성 등
총시업비 위치 시업규모 주요시업 시업명	신안시업 3,200백만원(국비: 1,600만원/지방비: 1,600백만원)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태평염전 일원 66,564㎡/연면적 737.8㎡(태평염전 면적: 6,430,000㎡) 염전전망대/염생식물관찰원/염전체험장 및 전통소금체험장/소금창고리모델링/소금공원 조성 등 대구시업
총시업비 위치 시업규모 주요시업 시업명 총시업비	신안시업 3,200백만원(국비: 1,600만원/지방비: 1,600백만원)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태평염전 일원 66,564㎡/연면적 737.8㎡(태평염전 면적: 6,430,000㎡) 염전전망대/염생식물관찰원/염전체험장 및 전통소금체험장/소금창고리모델링/소금공원 조성 등 대구시업 15,920백만원(국비: 7,960백만원/지방비: 7,96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17-36)

나. 국토부 소관 사업

1)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 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은 2016년 UN Habitat 제3차 회의에서 제시한 사회적 다양성 및 평등한 접근성(기반시설, 기초서 비스. 저렴한 주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안전한 토지 점유 촉진, 도시축 소 대응), 환경적 지속가능성(도시회복력 구축, 재해 위험 저하) 등의 도시 재생의 정책이념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광역지자체 선정 45곳(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앙 선정 15곳(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공공기간 제안형 10곳, 제주2곳, 세종1곳의 총 68개소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유형에 따라 총 50억원~2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43)

⁴³⁾ 우리동네살리기는 3년간 50억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원이 지원된다

〈표 3-23〉도시재생뉴딜 대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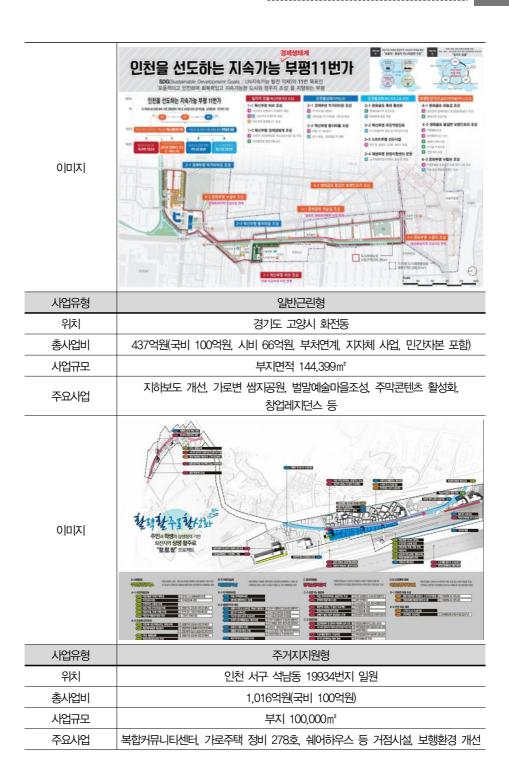
구분	대상시업	ŕ량
경제기반형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1
중심시기저형	 부산 북구 구포동 일원 인천 부평구 6517번지 일원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일원 세종 조치원읍 원리 14154번지 일원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 경기도 사용시 정왕동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일원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역 일원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 전라북도 역산시 중앙동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수성동,장명동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동 일원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동 일원 전라남도 오천시 장천동 일원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경상북도 명천시 왕동 경상북도 모항시 중앙동 일대 경상남도 시천시 동서동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19
일반근린형	 부산 동구 범일2동 일원 대구 동구 효목동 일원 인천 동구 송림동 581번지 광주 남구 양림동 일원 대전 중구 중촌동 울산 중구 학성동 1531번지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강원도 춘천시 약사리 문화마을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 · 신봉동 일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작동 전라남도 전주시 서학동마을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일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경상북도 상주시 동성동 일원 경상북도 상주시 동성동 일원 경상북도 상주시 동성동 일원 경상북도 상주시 동성동 일원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5

구분	대상사업	수량
주거지지원형	 인천 서구 석남동 1934번지 일원 부산 사하구 감천구 2동 일원 대구 북구 침산 1동 일원 광주 광산구 도산동 일원 대전 동구 가오동 울산 남구 삼호동 일원 경기도 광명시 광명 5동 경기도 안양시 명학동 강원도 태백시 장성 탄탄마을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일원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일원 전라북도 완주군 동청마들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동 일원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일원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일원 경상북도 거제시 장승포동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동 	16
우리동네살리기	 부산 영도구 영도구 봉래동일원 대구 서구 원대동 일원 인천 동구 화수동 736번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1번지 일원 광주 서구 농성동 일원 대전 유성구 어은동 일원 물산 북구 화복동 일원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강원도 동해시 동호지구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일원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일원 전라북도 군산시 장전/해이지구 전라남도 나주시 영강동 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일원 경상남도 히동군 히동급 제주도 제주시 일도 2동 	17

^{*}자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누리집(www.aurum.re.kr) 참조

〈표 3-24〉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별 사업사례

시업유형	경제기반형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신이sb 부지(폐조선소)				
총시업비	11,041억원(재정보조 417억원, 부처연계 2020억원, 지자체 304억원, LH 1200억원, 민간 7100억원)				
시업규모	부지면적 : 509,687m²				
사업목표	조선업 침체에 따라 파산한 폐조선소 부지에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등 미래형 수변 재생도시를 조성하여 기존시가지의 활력 도모				
주요사업	해양공원 , 해양관광 앵커시설, 창업지원세터 조선업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				
이미미	BUT TO WORK OF A SAME OF THE PROPERTY OF THE P				
시업유형	중심시가지형				
위치	인천 부평구 6517번지 일원				
총시업비	1,576억원 856억원(국비 180억원, 시비 90억원, 구비 186억원, 공공투자 400억원) 부처 연계사업 720억원(국비 338억원, 시비 174억원, 구비 208억원)				
시업규모	부지면적 : 226,795m²				
시업의 시급성	지역 쇠퇴(인구 및 시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소비유형변화에 따른 상권이용객의 외부유출 고밀 개발 및 높은 지가에 따른 도시발전 정체 및 시설노후화 부평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주요시업	혁신부평 허브조성, 생태굴포 물길 변 보행 인프라(박물관, 작은도서관, 갤러리, 공방 등) 조성, 문화굴포 축제활성화, 재생부평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경제·생태·문화의 복합적 재생을 통한 자속가능한 부평의 경제생태계'를 조성				





시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위치	대구 서구 원대동 일원
총시업비	107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공기업 7억원)
주요시업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사업(임대주택시업), 커뮤니티센터 건립, 음악거리 조성, 화랑마을 조성, DIY주민공방 조성, 자력형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도입이 예정중인 문화시 설은 64개소(커뮤니티시설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할 경우 모든 사업에서 문화시설의 건립계획에 발견되었다.

〈표 3-25〉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문화시설 도입 계획 현황

구분	커뮤니티 시설(공간)	전시관 (전시체험	공연장	도서관	문학관	창작공간	기타
부산 북구	1	2		1		1	
인천 부평구		4				1	
대전시	1						
세종시		3			1	1	교육장 문화창업공간 영상미디어센터
경기 수원시	3						
경기 남양주시	1						
경기 시흥시	1						
강원 강릉시	1	2	1			1	창작지원센터
충북청주시						1	복지시설
충남천안시	1	3					
전북 군산		2					청년문화공간
전북 익산시	2						

구분	커뮤니티 시설(공간)	전시관 (전시체험	공연장	도서관	문학관	창작공간	기타
전북 정읍시		2				1	시니어센터
전남 목포시	1	2					
전남 순천시	1	2	1				
경북 영천시	1	2	1				
		1				1	
경남 김해시	1	2		1		1	문화예술센터
	15	27	3	2	1	8	8

^{*}명칭에 의거하여 용도 설정

〈표 3-26〉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세부사업별 문화시설 도입 현황

세부사업	문화시설 도입유형				
시간, 자연, 공간, 시람의 단절을 잇는 구	·				
지역관광상품화/인프라 구축시업					
관광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개발					
역사자원활용 프로그램구축 시업					
리모델링 사업(문화예술플랫폼, 유휴공간)	문화시설 (커뮤니티공간, 근대역시판, 홍보관)				
지역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가로경관조성사업					
보행환경 개선 시업					
파사드 정비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도서관 등				
구포치안센터 Culture Factory 조성	창작공간				
교통체계 정비					
스트리트 퍼니쳐 사업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구축					
증강현실 구축시업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인천 부평구)					
혁신부평 허브 건설					

^{**}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의 구상안에서 조사한 결과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와 다를 수 있음

^{***}문화도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등 부처연계사업은 제외하여 산출함

세부사업	문화시설 도입유형
부평문화로 문화공연 전용 테마가로 조성	
	전시장
주민 및 방문자 스마트 서비스 제공	IOT체험관, ICT교육장
먹거리타운 재정비	
공가매입·리모델링 후 공영상가 조성	
마을 내 가로정비	
사회적경제 육성	
문화축제 운영 지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공모시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굴포천변 입체보행교 및 공공문화공간 조성	문화시설 (박물관, 작은도서관, 갤러리, 공방 등)
푸른 벨트 조성	
문화특화가로 조성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	력 UP 프로젝트(대전시)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시업	커뮤니티시설
창업인큐베이팅센터 조성사업	
대청호—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사업	
신탄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	1원 Ver.2(세종시)
조치원역사 리모델링	AR-VR전시 및 체험관 조성 대학연계비주얼아트갤러리
소상공인스타트업 지원거점	
조치원역 119지역대 신축 (3개대학 통합창업관)	평생교육원 VR룸 문화창업공간
김제영 문학관 조성	문학관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조성	
빅데이터 BZ센터	
BRT정류장 조성	
원리 연탄공장 환경개선	

세부사업	문화시설 도입유형		
고물상 매입이전	창작공간		
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예술카페	영상미디어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전문가 운영			
LH청년창업주택			
공사중단 건축물 재생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	문으로 通하다		
수원역앞 안전거리 조성사업			
수언역 앞 중심 상권 재생사업			
전통시장 골목 상권 살리기 사업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조성사업	커뮤니티시설		
어울림터 조성사업	커뮤니티시설		
다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커뮤니티 시설		
SLOW& 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l 역사문화 재생		
사릉로 역사문화가로 조성			
자전거 앵커시설 조성			
홍유릉주변 스마트 주치장			
공공청사 복합개발	행정복지센터(커뮤니티 공간)		
창업거점 복합개발			
금곡로 상권활성화			
시민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시티 리빙랩 운영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	사업(경기 시흥시)		
지역공동체 육성			
스마트 안전도시			
어울림 플랫폼	복합·문화·체육커뮤니티시설		
정주환경 개선 및 일자리창출			
올림픽의 도시,KTX시대 옥천동의 재도	약(강원도 강릉시)		
원도심지역상권활성화사업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	창작지원센터 문화예술체험장 공연장		

세부사업	문화시설 도입유형
	전시장 시민예술촌(창작공간)
지역일자리 창출	
골목경관 개선사업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공간, 우암동(충북 청주시)	
청춘허브센터 조성	예술인 레지던스(창작공간)
중앙로 청춘특화 거리 조성	
	복지시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나눔실천 해피하우스 운영	
 나눔 주차장 조성	
청년 특화 시장 조성	
도시재생 공동체 학교 운영	
청주 젊은 미을 축제 개최	
新 경제·교통 중심의 복합스마트거점공간 천안역세권	
	스마트 과학관
스마트 도시공간조성사업	스마트 AR체험관
	스마드 MR체험관
사회통합기반조성사업	커뮤니티시설
자율형 마을 관리사업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시업	
다시열린 "군산의 물길" 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푸른물결사업	청년문화공간(유휴부지 활용) 전시장
	선시명 체험장
황금물결사업	
기타시업	
역사가 문화로 驛史街 文化路(전북 익산시)	
기초생활인프라	시니어케어센터(커뮤니티 공간)
생활환경개선	
	<u> </u>

세부사업	문화시설 도입유형
	커뮤니티시설
특화거리조성	
교육	
마을기업	
지역 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 - 시민경제도시, 정읍
지역특화산업 거점조성	전시장 체험장
	세함이
지극득와인입 고도와 지역특화산업 네트워킹	
생고을센터 조성 	ᅔᅜᄓᄀᄔ
문화예술 창작거점 조성	창작공간
시민청안 300거리 연계, 상생네트워크	
노후주택리모델링	
생활복지사업	시니어센터
친환경 정주기반 조성	
시민경제 거점 조성	
원도심 주민역량 강화	
원도심 상생기반 구축	// T.I. L. C. C. C. L. N.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시업	
1897 개항문화거리 조성	전시관
목포진 역사공원 정비	
목포항 친수공간 조성	-1.1.1 -1
테마이아기관 조성	전시관
내항 해상테마보행교 설치	
선창복합타워 조성	커뮤니티시설
개항거리 주차장 조성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몽미랙夢・味・樂)이 있는 청사뜰	(전남 순천시)
만가지로다(多)	
置いている	전시관
나누다(多)	미술관

세부사업	문화시설 도입유형
	공연장
일자리다(多)	커뮤니티시설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경북 영천시)
원도심지역 상권활성화	복합문화공간(공연 · 전시장)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	지역복합문화센터 전시관(홍보공간)
지역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리	
	창작공간
일자리창출	
사회통합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북구청 이전시업	
문화예술플랫폼 조성	전시공간
청년 소호 클러스터 조성	
포항시 청춘센터 조성 및 운영	
북부소방서 이전시업	
북부소방서 이전부지 어울림플랫폼 조성	
포용과 화합의 무계(경남 김	하시)
원도심지역 상권활성화	
지속가능 네트워크 도로중심가능 회복	복합커뮤니티센터 창작공간 문화예술센터
역사문화 연계 지역 정체성 강화	
사회적 경제 기반 지역일자리 창출	체험장 박물관 도서관

2) 도시활력 증진지역 사업

'도시활력 증진지역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공익성 확보, 물리적 환경·경제·사회·문화 분야가 종합된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자체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2015년은 도시활력증진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4 개 유형(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하였으나⁴⁴⁾, 216년 신규사업부터는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2개의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23)



[그림 3-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기능(유형)별 내역사업

⁴⁴⁾ 도시활력증진을 위해 자자체가 추진했던 정부부처(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사업들이 2010년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후 3개 유형(도시활력재생, 마음활력재생, 기반시설정비)로 분류되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 지자차에게는 포괄보조로 30억원 이 4년동안 지원되고 있다. 2017년까지 872개 사업이 추진되고⁴⁵⁾ 있으며 2016년까지 국비 7,552억원이 책정되었다.

〈표 3-27〉도시활력증진사업 사업량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개소	96	113	160	120	155	184	21	23	872

^{*}자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누리집(www.aurum.re.kr) 참조

〈표 3-28〉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금액(억원)	1,013.4	964	963.4	1,086	1,031.7	1041.7	1,451.67	7,551.87

^{*}자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누리집(www.aurum.re.kr) 참조

LH공사에서 2017년 시행한 현장점검⁴⁶⁾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15개 표본 중 9개소 이상에서 문화시설이 발견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0%(15분의9)의 빈도로 문화시설 있을 것을 가정하였다.⁴⁷⁾

〈표 3-29〉도시활력증진사업 문화시설 포함 사업 추정량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개소	57.6	67.8	96.0	72.0	93.0	110.4	12,6	13,8	523,2

⁴⁵⁾ 종료사업 및 계속사업 포함

⁴⁶⁾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외부로 공개되는 사업현황자료를 찾을 수 없어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현장점검 결과와 자문회의를 통해 유추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⁴⁷⁾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기들에 대한 자문회의에서는 사업소당 1개소 이상 문화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지역개발사업에서 문화시설이 거점시설로 역할하기 때문이었다

(표 3-30) 2017년 도시활력증진사업 현장점검 대상사업 개요

7		재인	국비(전)[자	왕	사업비	7		
₹0 ₹Г	<u>서</u>	챡수	쁑	표	기위	시입경	시입내용	군와서열
	욷캐구	2013	2017	4,938	4,938	동래 고(古)도심재창조 동래방래시업	- 도로정비(기로 광장), 스토리텔링, 주민협정시업 등	ı
計	찬	2016	2019	1,717	1,717	부암동 철길마을 매디컬빌리지 조성사업	- HW(공동호스피텔및배후시설조성,기초생활기반시설) - S/M(공동체역당강화시업) 등	I
	중	2016	2018	3,000	3,000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 영화 메모리얼스트리트 조성, 영화빌리지 조성 2개동	영호별라지
II K	청주시	2016	2018	3,000 3,000	3,000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시업	— HMK보행환경개선, 소공원조성, 주차장조성) — S/M(예술기놀이터, 주민사려방, 미을축제지원 등)	I
Ю К	청주시	2012	2017	1,638	9,701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	HW(청주역사재현, 복합활용공간 조성, 주차장, 공원)S/M(도시닥타구성 및 운영 등)	보합 <u>할 경구</u> 간
묨	K⁄0 L∱	2015	2017	2,485	2,485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 HW(E장·특화거리·골목길·아인이당원 정비, 공가활용 등) - SM(미울축제, 주민역당강한프로그램 운영)	지역예술자원센터, 폴리형 태의 도서관, 갤러리 등 ⁴⁸⁾
	전주시	2016	2019	3,000 3,000	3,000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시업	— HM(이야기일조성, 담장하물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 S/M(주민프로그램운영:노래,한글,풍물교실등)	복합거뮤니티센터
봤	전주시	2015	2018	2,200	2,200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시업	- 도로포장, 상징시설물, 소규모 쉼터, 문화광장조성 등	I
	전주시	2014	2018	1,468 1,468	1,468	주거환경개선사업 (강당재구역)	- 도로, 주차장, 녹지	1

48) 대전광역시 중구(2016)

<u>F</u>	<u>۲</u>	국비자원기	원기간	상	사업비	西西	Ģ Ā	
Γ [0	<u>서</u>	챡수	쁑	국비	자방비	VED.	시남비중	エギバラ
	왕명시	2016		2018 2,563 3,562	3,562	소하동 구도심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	- 특화7로, 담장·벽면정비, 미을쉼터, 옥외광고물정비 등	口管名曰
경기	부천시	2014	2018	2018 5,000 10,009	10,009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판타박스' 조성	- 복합문화시설 건립(복지관, 어린이집, 도서관, 주차정등)	복합문화시설
	의왕시	2014	2017	2,625	2,625	2017 2,625 2,625 살기좋은 금천마을 만들기	- 도로정비, 소공원ㆍ체육시설 설차, 7본등, CCTV, 미을화만 등	(응팀과의)/전호팅이
[달성군	2015	2018	2018 3,188 3,188	3,188	도농복합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력화 "청조문화바람 High-five(5) 현풍"	- 커뮤니티시설(휴게공간), 텃밭, 프리미켓조성, 도로포장, 운동 시설 · 데크설치, 긴판개선, 북카페운영 등	3架4下以설
<u>-</u>	K 나	2013	2017	4,720	2017 4,720 4,720	남산호원둘레길 조성시업	— HW(특화거리조성, 기로 및 담정개선, 주차정) — S/M(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ı
	冷	2016	2018	2018 3,103 3,103	3,103	동인 · 삼덕자구 생태 · 문화골목길 조성시업	동인 · 삼덕자구 - H/M(가로환경개선, 공공시설 조성) 생태 · 문화골목길 조성사업 - S/M(오디오가이 드북제작,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등)	근대건축물 정비, 게스트하우스

*자료: 국토교통부(2017) 재가공

다. 농림부 소관 사업

1)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 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을 재원으로 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국고보조 율은 70%이고 지특회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국의 시·군 은 도농복합시 52개소, 군 71개소로 총 123개지역이 해당된다.

농림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경우, AURUM을 통해 집계되는 사업 개소수는 4.382개소이다. 2010~2017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 예산 7조2439억에서 다목적회관(관광시설로 분류됨) 건립에 사용된 예산은 6.690 억워으로 기능별 내역사업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다.

〈표 3-3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내역사업 상위 10개 현황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기능별 사업명칭	다목적 회관	연결 도로	가로경 관정비	기본계획 수랍비	생태공 원조성	고 교 교 교	운동 시설	미분류	마을 재정비	주채장
사업비 (억원)	6,690	4,066	3,137	2,965	1,929	1,641	1,619	1,488	1,301	1,1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45)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2)에서 실태조사에서 샘플링한 사 업지에서는 읍·면지역에서의 문화시설 설치가 통상적임을 알 수 있다. 49)

⁴⁹⁾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2012)에서의 사례지역 선정사유는 연구의 기준시점까지 유형 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고루 존재하고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유형에 있어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시설의 설치와 연관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2010~2014년 기간동안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비중이 69%인 상황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3-32〉일반농산어촌사업지 사례

	구분	내용	문화시설 유무
	지역	충남 이산시 염치읍	
세업	읍소재자종합 정비시업	은행나무거리 명소화시업 - 우회도로개설, 농도정비, 버스승강장 이설, 가로등 설치 한우테마거리 조성시업 - 주차장확충, 방문자센터, 테마가로 정비, 휴게 및 조경시설 (쌈지마당 , 쉼터, 걷고싶은 길 조성 연결도로 정비 시업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지미이	(선)지유축조선 1 전치스 -	쌈지마당
	지역	충남 이산시 송악면	전통예절문화
시업	면소재자종합 정비시업	기초생활기반확충 - 전통예절문화교육장 조성, 무선방송시설 설치, 광역상수도 지선 관로 설치교량보수, 쉼터조성, 마을둘레길 조성, 공원 및 광장조 성, 주민지차센터 조성 지역경관개선 - 중심가로 경관개선, 문패 설치, 돌담 조성, 슬레이트 지붕개	커뮤니티센터 마을심터 물놀이시설

⟨표⟩ 2010~2014년 기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단위 : 사업수

						'	DILL M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비율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24	34	67	73	93	291	28.7%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89	85	83	75	74	406	40.0%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10	3	25	18	16	72	7.1%
기초생활인프라정비	3	4	16	23	0	46	4.5%
기타사업	6	2					0.8%
시군역량강화					74	74	7.3%
지역창의아디어				25	92	117	11.5%
계	132	128	191	214	349	1,014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46)

	구분	내용	문화시설 유무
		지역역량강화 - 지역컨설팅 강화시업, 지역혁신력 강화시업	
	권역단위종합 정비시업	00권역단위종합정비시업 - 커뮤니티센터, 체험마차로, 전통식품가공시설, 컨설팅, 마을쉽 터, 교량확장, 무선방송장비, 도로경관정비, 물놀이시설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마을경영 등 00권역산촌생태마을조성시업 - 종합안내판, 입구유도시인, 지구안내판, 이생화재배단지조성, 산 양산삼 재배단지, 기능성 된장 작목반, 기공시설지원 산촌녹색체 함관, 도예체험장, 별자리관찰, 전통무예체험, 주민역량강화 등	
	전원미을조성 사업	주택건축 50호, 도로, 우수관로, 오수관로 , 상수관로, 커뮤니티센터, 경관녹지, 가로등 등	
	기초생활인프 라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시업 - 마을안길포장, 마을하수도, 세천정비 등 농촌생활용수개발시업 - 소규모수도시설개량시업 수도관설치, 녹색농촌체험마을시업 - 정자 및 야외공방, 주차장, 체험자재보관실, 교육장 및 주방, 친환경체험농장조성, 캠핑장 및 무대, 곤충체험시설, 물고기체 험장, 산책로 조성, 주민교육 및 홍보물제작, 꽃길 및 경관, 징검다리 조성 - 민박시설 개보수, 관정 및 오리시육 설치, 정자직업, 우렁이양식 망, 중경제초기 구입 등	
	지미이	(인)원인에요지전 기리조상시간 기리조상시간 기리조상시간 (인)의원이요도수 전 (인)무역이요 (인)무 (인)무 (인)무 (인)무 (인)무 (인)무 (인)무	
	지역	전남 장성군 북이면	 복지회관
사업	면소재지종합 정비시업	기초생활기반확충 - 연결도로 정비, 공동주차장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지역소득증대	리모델링 쌈지공원 다목적센터

	구분	내용	문화시설 유무
		- 명품한우단지 조성 지역경관개선 - 쌈지공원 조성, 테마장터 조성, 중심가로 간판정비 지역역량강화 - 역량강화, 컨설팅, 기본설계 등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	다목적센터, 전통예절관, 마을회관, 마을쉽터, 봉화대복원, 생태습지 체험학습장, 권역안내도, 생태하천 정비, 지역역량 강화, 제경비	
	기초생활인프 라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시업 지표수보강개발시업 생활환경정비시업	전통예절관 미을회관 미을쉼터 생태습지체험
	이미이	* 수 하는 300m * 수 가입시업 * 수 가입시업 * 수 하는 300m	학습장
	지역	전남 장성군 서삼면	
시업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	00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마을안길 및 돌담정비, 진입로정비, 도농교류센터, 종합복 지회관, 건강관리실, 세포마을회관, 편백수련관, 편백체험 장, 빨래터복원, 권역상징물 및 안내판, 마을쉼터, 교육, 홍보, 마켓팅, 컨설팅, 정보화, 마을운영 00권역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 숲속의집, 관리+체험동, 부대토목, 마을종합안내판, 입구 유도사인, 방향표지판, 대형관정 및 관로시설, 홈페이지구 축, 홍보마켓팅, 리더 및 주민교육 등	도농교류센터 종합복지회관 건강관리실 세포마을회관 편백수련관 편백체험장 체험동
	기초생활인프 라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시업 생활환경정비시업	



	구분	내용	문화시설 유무				
	지역 전남 함평군 월0면						
시업	권역단위종합 개발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 친환경공동주치장, 전통식품홍보관, 보행로조성, 복지학관리모 델링, 미을화관 리모델링, 다목적커뮤니티센터 지역경관개선 - 상가간판정비, 마을초입부정비, 월악산 주변정비, 시가지경관 조성 지역역량강화 - 역량강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복지회관				
	지미이	(연)교약원천 성급 아간 정비시간 의 가 문학에 의 기본 전 인	리모델링 마을회관 리모델링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2)

본 연구에서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일반농산어촌사업의 문화시설 전체 수 량은 1,423개소이며, 가장 많은 유형은 마을회관이었고 복지회관, 커뮤니 티·주민자치 용도의 시설, 도농교류 및 활성화센터의 순이었고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2년으로 추정된다.50)

⁵⁰⁾ 조사내용(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고

구분	다목적 회관 (다목적 센터)	복지회관	도농교류 및 활성화센터	커뮤니티 주민자치	마을회관 (마을센터)	수련 및 교육	도서 및 정보
수량	123	278	136	184	323	31	23
비율	8.6%	19.5%	9.6%	12.9%	22.7%	2.2%	1.6%
구분	전시 및 체험	창작	영화관	전수	문화명칭	기타	계
수량	82	12	2	9	125	95	1423
비율	5.8%	0.8%	0.1%	0.6%	8.8%	6.7%	100%

〈표 3-3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시설 유형별 공급수량

〈표 3-3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시설 연간공급량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량	1	1	1	1	0	1	33	49	33	60	67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수량	83	125	118	191	162	176	126	167	27	1	1,423

2)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라져 가고 있는 농어촌 문화를 기록, 복원하되 주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와 결합시켜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재생산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2011년 간 6개 사업 이 시행되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 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구분	강원 횡성	충남 서산	경북 의성	충북 옥천	전북 완주	제주 서귀포
예산 (백만원)	2,500	2,849	2,000	1,405	2,800	2,000
주요사업	금석광산 오픈갤러리시금체험 공간마을도서관야외공연장	 서당골 데 크 조성 구식이발 소와 주막 이 있는 근 대식 장터 재현 	• 유물터 전 통)옥 왕	 방앗간을 활용한 포 토스튜디오 폐교활용 천연염색 체험 감성예술학교운영 	델링 • 빈집이용 농가레스 토랑	 목감막 유 휴공간을 활용한 목 축문화박물관 목축문화 프로그램,교실개설
예산 집행방식	전액보조	전액보조	전액보조	전액보조	민간자본 보조(소프트) 전액 보조금 (하드웨어)	전체민간자 본보조

〈표 3-35〉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대상지역 추진체계 비교

3) 마을공방 육성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개인주의 심화, 노인문제, 세대간 갈등 등 사회문 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지역단위 거점공간(공방)을 조성하 는 사업으로 2015~2017년 기간 동안 43억원이 투입되어 37개소가 조성되 었다.

〈표 3-36〉 마을공방 육성사업 분포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37	3	4	1	1	3	1	1	1	3	2	1	1	4	5	3	2	1

사업유형은 문화예술형, 일자리창출형, 사회통합형 3가지 유형으로 구 분되고 공동체 회복, 전통기술 전수, 슬럼화 방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자 요구분석

구분	썡
문화예술형	지역예술가 중심으로 레저·음악·공예·전시 등 문화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일자리창출형	창업공간이 없는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사무공간, 유사업종 종사자들의 소통공간 등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
사회통합형	출산 · 육아, 노인 고독사 예방, 다문화 인권보호 등 육아 · 노인 · 다문화 등 취약계층 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표 3-37〉 마을공방 육성사업 사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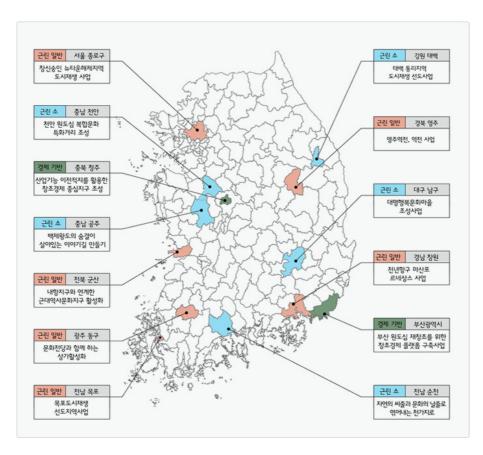
라. 부처 협동 사업

1)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 다.(도시재생특별법 제1장 총칙 2조 8항,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33조. 34조에 근거)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의 협력사업으로 선도지역에 투입된 국비예산은 1412.6억원이고 도 시재생 일반지역에 대한 국비예산은 3,250억원이다.

선도지역은13개 지역(경제기반형 2, 근린재생 11)에 사업을 2014년 착수 하고 2017년까지 시행하여 성공적 도시재생 모델 확립하고자 하였다. 일반 지역은 선도지역 사업의 초기성과를 토대로 2016년에 33개(경제기반 5, 근린재생 28)를 선정하였다.



[그림 3-5] 도시재생 선도지역 현황

〈표 3-38〉 도시재생 일반지역 특화구상

구분	시업별 내용
경제기반형 (5개소)	 (서울 노원도봉구) 창동역 주변 체육시설, 철도차량기지 부지 등에 지식산업단지와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서울 동북권 경제거점 조성 (대구 서 북구) 핵심산업(섬유, 안경 등)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여 서북권 허브 형성 (인천 중 동구) 일반인에 개방되는 인천내항(1·8부두), 근대문화자산(차이나타운), 관광자(월미도) 등을 활용한 해양문화산업거점 조성 (대전 중동구)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창조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대전역세권에는 MCE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경제 거점 확보 (경기 부천시) 준공업지역의 4대 산업(금형·로봇·조명·패키징) 특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시기능 중심 허브 구축

구분	사업별 내용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개소)	 (경북 안동시) 태시묘, 한옥마을 등 역시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창조산업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전북 전주시) 전주부성과 한옥마을, 원도심 특화거리를 연계하여 전통문화거점기능 및 원도심 위상을 강화하고, 도심관광 활성화 (제주 제주시) 역시문화자산 복원(관덕정 광장 조성) 및 관광자원화(도심올레길 조성)를 통한 지역 정체성 회복 및 상권활성화 도모 (경남 김해시) 가야역시문화 보존과 병행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를 활용한 관광 기반(월드 누들 빌리지, 세계문화 아시장)을 조성 (충북 충주시) 구도심 유휴 시설(우체국 이전부지 등) 등에 청년창업 문화 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충주목 관이골의 경관 정비 (부산 영도구) 두부공장 어묵공장(삼진(어묵) 등 경쟁력있는 지역점포의 기술 전수체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상권 회복 (충북 제천시) 업종전환을 통해 저층형 노선상가를 조성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대학생 행복주택 등 건립 (울산 중구) 중부소방서 이전부지, 장기방치건축물 등에 문화산업 (창작멀티플랙스) 기능을 도입하여, 원도심내 새로운 창의인력 유입 (경북 김천시) KT&G 폐창고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평화시장 빈점포를 활성화하여 지역활력 거점 조성
일반 근린재생형 (19개소)	 (부산 서구) 피난민 정착촌(비석마을)으로 형성된 경사지 마을을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근린경제 활성화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배후주거지로서 공동체 주택 등을 확충하고, 지역주민과 중국동포가 어우러지는 통합 거점 조성 (경기 성남시) 대학생 등을 위한 주택공급 및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지역 거주환경 개선 (경기 부천시) 뉴타운 해제과정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및 문화이벤트 개최, 골목길 명소화사업 추진 (대구 서구) 원고개시장의 스토리, 문화자산 등을 활용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지역일자리 창출 (광주 서구) 양동시장 현대화와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거주환경 개선 (광주 광산구) 교통의 허브인 KTX 송정역 앞 음식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등을 '맛' 과 '멋' 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형 상권으로 특화 (강원 춘천시) 번개시장과 소양강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여행 등의 녹색관광거점으로 육성 (부산 강서구) 낙동강 생태공원의 자연자산과 주산품(토마토) 기반 6차 산업을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원 주거환경 조성 (부산 중구) 보수동 고지대마을의 주거환경 및 생활기반을 개선하고, 헌책방 골목을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및 소규모 일자리 창출 (울산 북구) 염포 등 역사자산을 활용한 특회시업을 시행하고, 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하여 노 사 민 협력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구분	사업별 내용
	• (서울 용산구) 강남권으로부터 양호한 접근성과 남산 자연자산, 해방촌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녹색문화마을 조성
	(충남 이산시) 장항선 모산역 이전부지에 어린이 체험문화 시설 등 조성을 통해 주변 신도시 지역의 문화 서비스 수요 충족
	• (인천 강화군) 고려시대 역사적 유 무형 자산(왕의 길)을 활용하여 테마가로 시장 등을 개선하고 관광 명소화 추진
	• (경기 수원시) 화성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성곽도시의 특성을 살린 재생시업 시행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루트 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예술 공간 등 조성
	(전남 나주시) 나주읍성을 복원하고 한옥 등을 정비하여 살아 있는 박물관 도시로 조성하고, 역사문화 체험관광 활성화
	(전남 광양시) 광양읍성 복원 및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전통적인 경관을 구축하고, 비 공터 등에 도시 숲 등 조성
	(울산 동구) 방어진항과 대왕암 등 관광거점을 정비하고, 음식점 등 상기를 특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3.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사업)의 공급 추이(증가 추세)

신규유형의 문화시설의 건립이 가능한 문체부, 국토부, 농림부, 부처협 동사업의 개소수는 연간 100~160건 정도로 집계된다.51)

〈표 3-39〉문화시설(사업) 연간 증가량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산정 기준
	생활문	화센터					10	36	29	21	14	110	시설수
	작은영	5화관					8	8	16			32	시설수
				4	2	7	6					19	사업수
문	문화특화	문회					5	5	5	5	_	20	사업수
군 체	지역	문화을					8.5	8.5	8.5	8.5	_	34	사업수
부	산업단지 시설 둔						11	3	6	6	_	26	사업수
	문학	한관	3	2	3		4 52)	1	4	2	2	21	시설수
	근대(CIPA) 벨트화시		1.67	1.67								3.3	사업수
		경제 기반형									1	1	사업수
		중심 시가지형									19	19	시업수
국 토	도시재생 뉴딜	일반 근린형									15	15	사업수
부		주거지 원형									16	16	시업수
		우리동네 살리기									17	17	사업수
	도시활력	증진지역	57.6	67.8	96.0	72.0	93.0	110.4	12,6	13.8	_	523.2	사업수
농	일반농산	어촌시업	125	118	191	162	176	126	167	27	_	1,092	시설수
o 림	신문화공	군간조성	2	2								4	사업수
부	마을공	방육성						12,33	12,33	12,33	_	37	사업수
부	지시고	생선도					3,25	3.25	3,25	3,25	0	13	사업수
부 처 협 동	도시재	생일반							16,5	16,5	0	33	시업수
	합계		189,3	195,5	292	241	3248	313,5	280,2	115.4	84	2035,5	시업당시설 1개산기정

^{*} 연간공급량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평균값을 적용함

^{** 2018}년의 '-'는 0이 아니라 관련 문헌을 통해 집계되지 않은 상황임

⁵¹⁾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개소수는 많으나 개별사업에서 문화시설의 건립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타부처에서 공급되는 문화시설의 소유권이 해당지자체 에 있는지 지역주민에게 있는지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⁵²⁾ 문체부 신규사업수와 한국문학관협회 등록수를 합한 값

제3절

수급 분석

1. 분석의 개요

가. 공급량의 증가를 부담할 수 있는 지자체의 운영여력 분석

문화시설의 수급판단에 있어 본 연구는 문화시설의 공급량에 대한 소유 주체인 지자체의 운영여력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문화시 설의 공급에 대한 총량적 접근이 아닌 공급추이에 기반한 동태적 접근방식 이 현황을 진단하는데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태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는 공간적 분포를 전제로 한 시설의 수급현황 판단결과가 면적 또는 인구밀도 대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산지의 경우 인구밀도는 작지만 면적은 넓어서 공간적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신규공급의 사유가 되고. 평지에서는 인구밀 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대상인구가 많은 것이 신규공급의 사유가 되기 때 문이다. 수급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는가에 따라 수혜지역이 달 라지는 구조가 형성되므로 인구 및 면적에 기반한 정태적 분석방법의 한계 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은 다른 도로. 철도. 다리 등의 SOC와 달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컨텐츠에 의해 편익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시설이라는 하드웨어의 수량을 통해 수급현황을 파악하기보다는 시설의 운영상황을 고 려하여 수급현황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문화시설의 공급량은 증가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문화예산은 한정 적인 상황으로 문화시설의 부실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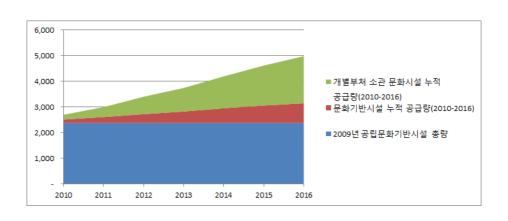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공급추이(증가량)를 지자체의 운영여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2. 공급 추이

2010년 이후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공급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말미암 아 2016년말 기준으로 전체적인⁵³⁾ 문화시설 공급총량은 4983개소로 2010년 2,378개소의 2배 수준이 되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립된	2009년 ⁻ 화기반시설 총량	2,378								
OH7 L	문화기반시설	132,2	102,2	112,2	101,2	125,2	110.2	85.2		
연간 증가량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189.3	195.5	292.0	241.0	324.8	313,5	280,2		
	문화기반시설	132,2	234.4	346.6	447.8	573	683,2	768.4		
누적 증가량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189.3	384.74	676.74	917.74	1,242,49	1,555.97	1,836.15		
	계	321.5	619.1	1023,3	1365,5	1815.5	2239.2	2604.6		
	문화시설량	2,699	2,997	3,401	3,744	4,193	4,617	4,983		

〈표 3-40〉 문화시설 공급량 추이



⁵³⁾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문화시설과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사업)의 공급량을 합한 값이다.

3. 운영여력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문화예산비중이 일정한 상황에서 문화시설의 증가가 진행될 경우, 증가되는 문화시설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운영여력)인지를 파악함으로서 문화시설의 수급현황이 적정한지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기본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자체에서 문화예산은 일정 한 비율로 수렴하고 있다. 둘째, 전체 지자체 전체의 예산은 상승추세(2009 년 137.5조, 2016년 184.6조로 34% 증가54))에 있다. 즉, 지자체 전체의 2016년 문화시설 운영예산은 2009년의 문화시설 운영예산(BU,)의 1.34배 로 가정할 수 있다. 셋째, 문화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의 비용(C_{op})이 요구된다. 기준년도(2009년)의 문화기반시설수(2,378개 소)를 기준으로 산출된 관당 운영예산(Con=BU_c/2,378)이 최적값이라고 가정한다면, 2016년을 기준으로 증가된 문화기반시설수(768.4개소)의 운 영에 필요한 관당 운영예산은 2009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상의 전제로 분석할 경우,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당 운영비는 문화기반 시설 운영비의 2.185% 정도가 산출된다. 문화체육관광부(2012: 59)에서 조사 된 문화기반시설의 관당 연간 운영비 9억원에 이 수치를 적용할 경우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당 연간 운영비는 1,967만원이 산출된다. 1,967만원이 운영진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때. 전체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의 33% 가 3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 될 경우, 나머지 67%는 운영인력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이 수치는 일선의 문화시설 운영의 부실가능성 예상할 수 있는 수치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판단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수급여부에 대한 정책판단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⁵⁴⁾ 행정안전부(2017)

2009년의 문화시설 운영예산 : BU。

 $0.34BU_{c} - BU_{c}/2.378 \times 768.4$

2016년의 문화시설 운영예산 : BU_c × 1.34

→ 0.34BU。: 2010부터 2016년까지 공급된 문화시설(문화기반시설총람상 의 문화시설+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공급량)의 운영예산

문화기반시설 관당 운영예산의 최적값(Con) : BUc/2,378으로 가정 2009년 기준으로 2016년까지 증가된 문화기반시설수 : 768.4개소

→BU_c/2,378×768.4: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된 문화기반시설의 운 영예산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전체에게 할당할 수 있는 운영예산 :

2009년 기준으로 2016년까지 증가된 개별부처소관 문화시설수 : 1836.15개소

→(0.34BU。-BU。/2.378×768.4)/1836.15: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의 관단 운영예산

〈표 3-41〉 문화시설 운영비 비교

구분	문화기반시설 관당 운영비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 관당 운영비				
산식	BUc/2,378	BUc(0.34 - 768.4/2,378)/1836.15				
비율	100%	2,185%				

정책개선 방향 제안



현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다. 지방분권국가 로의 개헌,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분권을 병행하고 있으며 권력의 분권과 재정의 분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지방분권형 국가 추구

가, 개헌 추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국가 선언과 주민자치권의 확대를 목표로 한 지 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55). 세부적으로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일괄이양법 제 정,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6:4), 지방재정 자율권 강화 등의 공약을 추진 중에 있다.⁵⁶⁾

나.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⁵⁵⁾ 상위정부에 대한 분권/집권의 구분에 의한 단체자치와 시민에 대한 참여/통제의 구분에 의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 성립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⁵⁶⁾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방향은 ① 중앙-지방정부간 권한재배분 ②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③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④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⑤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⑥ 시민사회 활성화 ⑦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이었으며,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참여정부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으로의 전환을 문재인 정부는 추구하고 있는데 분권에 있어서는 1995년 민선자치 이후, 20여 년간 축적된 지역주도의 자치역량과 공간, 위치별 복잡다양한 문제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골자로 볼 수 있다.57)

- ◇ (지역주도 자립역량 축적) '95년 민선자치 이후 20여 년간 지방 자치 경험・자산 축적과 국민 참여욕구 중대
- ◇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공간규모별 복잡・다양한 문제 증가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필요

분권

- ◇ (헌법적 가치 실현) 헌법 전문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경제 부문의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실현
- ◇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낙후지역 배려, 지방소밀 대응, 도심 재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 번성으로 원주민 이탈) 해결

포용

- ◇ (혁신역량 제고) 분권에 걸맞는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인재-특화산업-일자리의 지역내 선순환 혁신 생태계 구축
- ◇ (혁신성장)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 유휴자원 (산립·해양·문화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

혁신

[그림 4-1]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

다. 국가균형발전 추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

⁵⁷⁾ 포용의 가치는 권한의 이양에 따른 소외를 지양하고 형평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역내,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혁신은 권한을 가진 책임있는 주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위한 가치로 볼 수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중앙 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의 지속시 도래할 수 있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 화. 지방소멸 등의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구조 변경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중앙-지방간 사무배 분의 보충성의 원칙 규정은 필연적으로 보조금 제도의 개편을 통해 재정과 사무에 있어 분권이 요구된다(하혜영, 2017).

과거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정책은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문화정책 의지 보다는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의 일부분으로 간주된 측면이 강했고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한 문화라는 시장의 관점에 기초한 미국식 문화시스템과 공공서비스로서의 문화개념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관리를 기본 축으로 하는 프랑스식 문화적 공공서비스와 문화정책론이 서로 상이한 방향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이식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 근본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문화정책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시장의 원리가 아닌 간섭과 규제의 방식에 더 가깝게 되고 민간자본보다 는 공적재원의 확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지속성은 정부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연속성에 의존하는 측 면이 강하며, 특히 지역문화 분야의 재정배분 방식은 국비-지방비의 매 칭펀드 방식으로 인해 지역의 독자성을 가진 문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의 중앙종속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훈, 2016: 44-49).

김현기(2018)는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교부세를 주로 매칭비로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개편방향으로 국가최소보장적 사업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준 보조율의 단순화 및 차등보조율의 워

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최병호(2018)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분권은 지방세 확충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며(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조정),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지방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공하며(국세를 지방세 이양), 지방세 확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수격차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통해 해소(이전재원의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58)

⁵⁸⁾ 국정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의 조성
②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분권적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지방이 담당하도록 전화하는데,
재정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간 재정지출책임을 조정 ③지방세를 위시한 지방의 재원확충은
첫 번째 및 두 번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책임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간 세원재배분을 통하여 지방의 재원을 확충

문체부의 지역 문화시설 관리체계 분석

문체부의 관리체계는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시설을 중심으로 주된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운영단계에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원대상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부터 변화되고 있는 문화정책의 궤적이 축적된 다중적인 관리체계로 볼 수 있는데,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성과 무형의 특성을 지닌 문화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점이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권력의 집권과 분권 상황, 문화의 협의 및 광의 개념의 적용상황에 따라 적합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분권 및 광의 문화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운영지원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DB의 축적은 분권 및 집권의 상황과 관계없이 문체부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1. 문체부 지역문화시설 관리체계의 개요

가. 성립구조

우선, 1990년대 중반까지 근거법률이 제정된 시설유형(즉, 문화기반시 설총람 상의 시설유형)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메커니즘(문체부의 필수조건 제시, 지자체의 충족, 문체부의 지원)을 형성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시설(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은 시설 또는 기관의 필요조건을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고 등록절차를 통해 지자체의 시설이 문체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

을 취함으로서 문체부의 관리 및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설유형들 간의 차별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근거법률은 각 시설의 고유목적시설의 보유 여부 및 면적의 충족, 해당시설 유형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인력의 보유 여부를 해당 시설의 필수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관리 방식

문체부의 지역문화기반시설 관리체계는 건립단계에서의 검증과정과 운영단계에서의 지원과정, 사후의 DB집적으로 크게 구성된다. 59) 문체부의관리체계는 건립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건립에 있어서는 그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지원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 주요 시설유형의 공급에 대한 타당성 사전평가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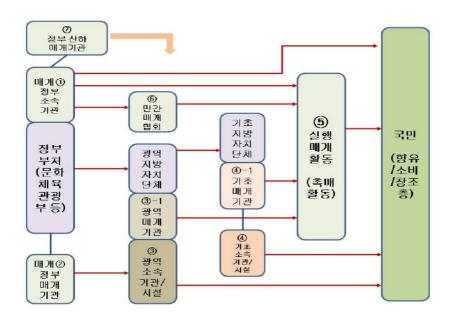
문체부 관리체계의 영역으로 포함되는 시설(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시설인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이 해당)은 건립에 대해 타당성 사전평가제(또는 컨설팅)를 통해 관리되어지고 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지특회계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컨설팅 또는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컨설팅 또는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자료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며, 그 의견이 지특회계의 운용자인 기획재정부로 보내지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 정책전달경로상의 전문기관(협회)을 활용한 문화시설 운영지원

운영에 있어서는 정책전달경로상의 전문기관(또는 협회)을 통해 시설의

⁵⁹⁾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운영단계에서의 인증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 등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형태 를 띄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정부산하의 매개기관(전문기관. 협회 등)은 정책전달경로 상에서 광역 및 기초단위의 문화기관 및 시설, 최종 향유단계 에서의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2] 국내문화매개 전달체계상 단계별 역할구분

자료: 김규원(2014: 29)

〈표 4-1〉 문화시설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주요 사업 현황

기관 (설립연도)	시업/계정명
한국도서관협회 (1963) ⁶⁰⁾	책임는 가족, 도서관문화, 대활자본 제작 보급 시업, 도서관과 함께하는 IT희망나눔 운동, 학교도서관 독서자도 사서자원, 내 생애 첫 작가수업,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체계구축, 작은도서관 독서자도 프로그램 개발 자원 시업,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운영
한국박물관협회 (1991) ⁶¹⁾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소년의 멘토 KB!」와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 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 전국 박물관·미술관 교육이커데미,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 봉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1962) ⁶²⁾	어르신문화프로그램시업, 문화지원봉사 활성화시업

기관 (설립연도)	사업/계정명
한국문화 예술회관연합회 (199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회공감, 문화가 있는 날, 문화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아카데미
전통공연 예술진흥재단 (2007)	창작연희 작품공모, 전국풍물상설공연지원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2012)	문화복지 책나눔 지원, 세종도서 선정 보급, 디지털 도서환경 조성 인문독사아카데미 운영 소오계층 독사활동 지원 독사동양리 및 공간나눔 지원 인문활동 가 양성 파견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 (2000)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역문화진흥원 (2016)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문화이모작, 문화가 있는날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2005)	직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작은미술관 전사활성화자원 소와계층 문화순화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및 운영 지원 무자개다리 사업 등

3) DB 집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생활문화시설이 문체부 정책범위에 포함되 었다.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현황파악이 이루어지는 시설 유형은 문화기반시설총람에 기재되는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로 건 립과정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문체부의 관리대상은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생활문화시설이 관 리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중에서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시설이 중심이 되고 부가적으로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DB를 통해 관리되는 대상이 된다.

시계열적으로는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문화기반시설과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이 집계되고 있다.

⁶⁰⁾ 법정단체로 지정

⁶¹⁾ 설립인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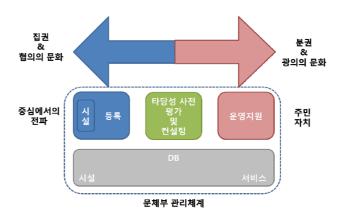
⁶²⁾ 창립일 기준

2. 지방분권 및 문화 개념의 확대 상황과의 적합성

등록제도는 시설의 사양을 충족시켜야하는 상황이나 광의의 문화개념이 강화될 경우 시설 간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권의 상황이 강화되어 문체부의 지원수단에서 비교우위(보조율)가 확보되기 어려운 가운 데 타부처 소관의 문화시설 공급의 제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의 제도가 지방본권 및 문화개념의 확대 상황과는 적합도가 낮지만 기존에 공급된 전문적 문화시설인 현재의 문화기반시설과는 적합도가 높은 상황이다.

운영단계에서의 지원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분권의 궁극적 대상인 개 인을 지향하고 이것이 주민자치(3)를 뒷받침한다는 면에서 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DB는 가치중립적인 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권력의 분권 및 집권 상황 에 관계없이 문체부 관리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게 된다. DB는 집권 및 협의의 문화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시설사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았던 반면. 분권 및 광의 문화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비중이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3] 지방분권 및 문화 개념의 확대 상황과 문체부 관리체계

⁶³⁾ 권력의 분권 상황에서 결정부하량을 나누어 감당해야 하는 당위는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율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김형국, 1997:189)

제3절

정책개선방안(문화기반시설 범주체계 제안)

문체부의 정책은 국정기조의 방향(집권과 분권)의 경향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기존의 정책구조의 변형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 집권의형태로 진행된다면 시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관리체계가 강화되며 완전한분권이 진행된다면 이용자 중심의 관점으로 수급과 관련한 제반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

문체부의 문화기반시설 관리체계는 운영단계에서의 관리를 지향하고, 가치중립적 관리수단인 DB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추진 과정은 집권 및 분권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체부의 기존 관리체계 및 향후 정책변화에서 독립될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범주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문화시설정책에 있어 문체부의 업무영역과 지향점을 제시한다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즉 범주를 구분함으로서 수급에 있어 비교하여야 하는 대상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광의의 문화시설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 법 상의 생활문화시설을 바탕으로 문화기반시설의 범주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집권과 분권의 상황에 따라 변화단계를 시설중심단계, 이용자 중심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현재의 문화기반시설이 시설과 더 밀접한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이용자의 활용(창작, 향유등)에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의 지향점과 현재의 현실적여건 사이에서 정책방향(즉 거버넌스의 조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과도적단계를 두었다.

시설중심단계는 문화기반시설총람 상에 포함된 시설유형이 최근 다양해

지는 문화시설 유형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하여 시설사양의 전문성 과 비차별성을 기준으로 전용시설 및 복합시설, 문화연계시설로 구분하였다.

과도적 단계에서는 정책전달경로상의 매개기관을 두고, 이들을 통해 이 루어지는 전달 및 매개 과정에 적합하도록 거점형 시설과 이용자와 접촉단 계의 근린(생활친화)형 시설로 구분하였다. 64)

마지막 이용자 중심 단계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빈도 및 접근성을 기준으로 상시적 또는 특별(간헐적)한 이용에 따라 시설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표 4-2〉문화기반시설 체계 제안(안)

집권 분권																
협의의 문화 광역							광의의 문화									
	시설 중심	단계	과도적 단계 (거버넌스 중심 단계)			이용자 중심 단계										
성질	구분	시설	기관	성질/ 구분	시설	성질	구분	시설								
		공연장			공연장		특별 이용 시설	공연장								
	저요	도서관		거점 형	대표도서관			_								
	전용 시설 복합 시설	미술관	1		미술관			미술관								
시설사양 의 전문성		박물관			박물관	특별		박물관								
		창작시설			창작시설	이용		창작시설								
		문예회관			문예회관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_								
		_			(거점형)											
		문화의집 문화		문화의집			문화의집									
											새하므중에	원		생활문화센터		
레나시나	ㅁᇂڶ	생활문화센터	등	근린	(근린형)		OIHI	' ' ' ' ' ' ' ' ' ' ' ' ' ' ' ' ' ' '								
시설사양 의	문화 영계	보지시설		형	얼시자본	상시	일반	벌시자본								
	연계 시서	청소년 시설	1	(생활	청소년시설	이용	이용	청소년 시설								
비차별성	시설 	시결 		시설 	시설	시설			친화)	주민센터		시설	주민센터			
		주민센터 등			도서관(자관,			도서관								
		. = . 0			작은도서관)											

⁶⁴⁾ 이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의 구성이 달라진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2017), 국립박물관 연보

국토교통부, (2017),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리 및 활성화 연구 국토연구원. (2015).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7).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NARS 현 장조사보고서」. 제54호

- 기획재정부. (2017).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김경용·김영옥. (2015). 공간구조와 경제활동의 선후행관계에 관한 연구. 「국토 계획」. 제50권 제5호. 서울: 국토연구원
- 김규원. (2007). 지역문화시설 건립의 성공과 실패-문화예술회관 사례를 중심으 로. 「국토」
- 김규원, (2014),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연진. (2013).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행선. (2012), 1970년대 제1차 문예중흥 5개년(1974-1978)계획의 내용과 역사 적 의미
- 김현기. (2018). 지방세 확충과 재정분권의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자료」
- 김형국, (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델 실태분석 과 통합적 발전방안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 대전광역시 중구. (2016).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학술연구용역 문화공보부, (1970), 문화공보30년
- 문화체육관광부. (2006). 변화하는 지역문화환경에서의 문화의집 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1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11). 지역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평가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12).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5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17a). 2018년도 예산 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17b). 2017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7c). 2017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박광무. (2013). 한국문화정책론

- 박신의. (2013a). 서울시 창작공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연구—금천예술 공장을 주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1호
- 박신의. (2013b). 창작스튜디오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책 구도와 타당성. 「문화정 책논총」제27권 제2호
- 송미령 외. (2013).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혜원. (2015).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 화관광연구워
- 오명석, (1998),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제4 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이아름 임동일(2013) . 원주시 도시공간구조 변화 분석. 「지역발전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지역발전학회
- 이원태 외. (2004),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

구워

- 전지후 정문기. (2013). 문화경쟁력과 창의성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25권 제2호
- 전훈. (2016).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 「공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서울: 한 국비교공법학회
- 정갑영, (1993),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제5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광렬. (2016).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 정광렬. (2017). 생활문화정책의 어제와 오늘.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워 크숍」. 인천문화재단
- 정창무 외. (2010). 문화기반시설 공급 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역문화진흥원. (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 길잡이
- 창원시청. (2016). 창원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사업구상서
- 최병호. (2018). 지방세 확충과 재정분권의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자료」
- 하혜영. (2017).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시리즈 5]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와 과제. 「이슈와 논점」, 제1390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개발연구원. (2006). 전남 여수공립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2017년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문화영향평가 연구
- 한승준·박치성·정창호. (2012).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 영국, 프랑스,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제50권 제2호 행정안전부(2008), 지역생활여건개선 사업추진 기보계획 마련연구 행정안전부(2017),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Toffler, E.(1980). The third wave 이윤택(역)(1989). 한국경제신문사

ABSTRACT

A study on balance of demand and supply of the regional cultural facilities and its improving method

This research is aimed to recognize balance of demand and supply of the regional cultural facilities and develop its improving method.

The policy of culture have had many aspects because the meaning of culture was changed from art to "that complex whole of custum, knowledge, belief, etc." in 1990' korea. in which civil revolution was occurred and military government was ended. So, Private's autonomy, cultural diversity and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authority have emphasized since 1990's.

This history disturbed the concept of cultural facility. Each cultural facility has different function and space. Distinction standard of cultural facility differs from supplier to supplier.

To figure out the balance of demand and supply of the regional cultural facilities, Investigation on the budget of MCST(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survey on the building list of the regional develop projects of the other ministries were proceeded.

The cultural facility supply of the other ministries was 2,605 units while MCST's supply was 768 units from 2009 to 2016. Because of larger quantity, Presumed operating budget of facility under the other ministry was 2 percent of it of facility under MCST, having prior condition which increased facilities under MCST have same volume as b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supply of the regional cultural

facilities is bigger than local government's capability in cultural facility's operation budget.

This study recommands an advanced classified table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has 3 phases which is along with culture's concept(art, "that complex whole", the medium of these) and is linkaged with hardwares, operating organizions and users' needs, it is purposed to recognize the diversity of cultural facility to include many shapes of cultural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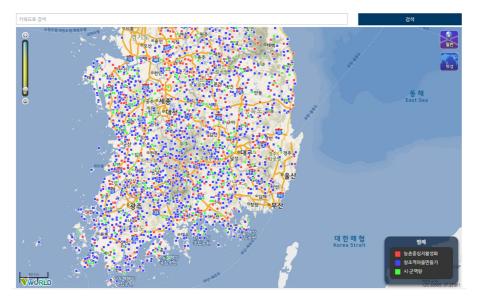




일반농산어촌사업에서의 문화시설 공급현황 조사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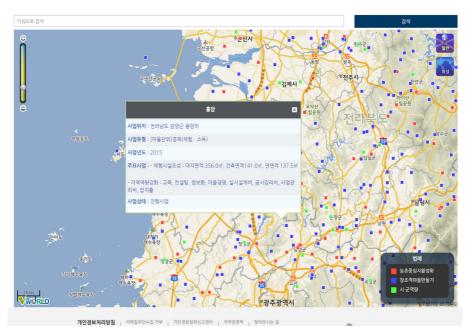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65)에서 지도상에 표 시되는 개별사업의 사업내용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농산 어촌사업에서 공급되는 문화시설의 공급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림 1] 일반농산어촌사업 분포현황

조사기간은 2018.6.20.~6.30.에 진행되었으며, 조사방식은 개별 단위 사업의 위치점을 클릭한 후 팝업창에 게재되는 정보를 다시 DB화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⁶⁵⁾ www.raise.go.kr



[그림 2] 조사방식

2. 조사의 조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능별 사업은 크게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지역역량 강화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소득증대는 민간의시설이 그 대상이 되고, 지역역량강화는 소프트웨어 지원이므로 제외된다. 또한 경관개선의 경우도 지자체와 주민 간에 매칭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므로 조사진행과정에서 제외하였다.

〈표 1〉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 주요내용

시업의 종류	시업별 주요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원대상: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처장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정보화시설 등 농어촌의 농업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한 농어업기반(소규모용수개발, 경작로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등)시설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의 종류	시업별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시업,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동휴양시설 및 서비스전달체계, 재해대비시설 등이 해당 * 지원제외 :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경관개선	 지원대상: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유지 · 보전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 농어촌지역의 불량경관의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민속자료 등의 정비사업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사업 등 지원조건 지붕, 담장, 간판정비는 10가구 이상의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
소득증대	지원대상: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체험시설, 폐교임대활용, 생태학습장, 문화체험관 등 - 지역의 농·특산물 부기가치 증대를 위한 공동 농특산물판매장, 공동소규모가공시설, 공동 저온저장고시설, 공동 농산물선별장 등 지원조건 -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 법인)에 한하여 지원, 사업비 총액의 20%는 수익자(주민) 부담 -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가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자구입비, 건물 암차비 등은 수익자(주민)가 부담
지역역량 강화	 지원대상: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능별시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시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시군은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 이내에서 '일반농산어촌시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지문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지원조건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다음연도 예산신청액의 10%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기본계획수립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 시 10%초과 가능) 지원제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와 종합사업(하드웨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외의 S/W 단독사업은 지원제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2: 48)

일반농산어촌사업의 경우, 신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급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복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6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이 기존의 시설이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공급량에 포함하였다.

이외에서도 시설을 검색하는데 있어서 야외 공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장'과 같은 시설은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공연장의 공급량은 제외 되었다.

3. 문화시설의 판단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업의 정보는 사업의 유형, 위치, 사업연도, 주요사업, 진행상태로서 주요사업내용에서 시설명칭을 바탕으로 문화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시설을 선별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광의의 문화시설인 생활문화시설의 시설기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기능과 시설명칭에서 유출할 수 있는 시설에서 행위를 비교하여 문화시설 여부를 판단하였다.

생활문화시설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기존 문화기반시설의 핵심기능⁶⁷⁾인 공연(문예회관), 전시 및 수장(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 및 정보 서비스 (도서관) 외에 복지, 수련 및 교육, 전수, 회합 및 커뮤니티 형성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⁶⁶⁾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에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도 기술되고 있으나, 그 정보가 정확한 지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⁶⁷⁾ 문화시설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은 시설이 지닌 공간 · 설비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시설에서 밖에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공연장은 공연설비와 객석(무주대공간)을 요구하게 되며 박물관은 소장품을 보관하기 위한 항온항습의 환경기준, 전시 과정에서의 직사광선 차단, 도서관의 경우는 책을 보관하기 위한 서고와 도서의 하중을 고려한 구조계획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간 · 설비적 특성은 해당시설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다른 시설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존 문화기반시설의 핵심기능은 다른 시설과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표 2〉생활문화시설 유형별 주요 기능

생활문화시설 범주)	세부조항	세부시설	주가능	
			1. 공연시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공연	
	공연장	등 공연시설	영화상영관	영화상영	
			야외음악당 등	공연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전시시설		
		1호 및 제2호에 에	박물관, 미술관	전시(수장)	
		ᇎᆝ 말	화랑	전시	
	시시설		조각공원	전시	
		법 제2조제1호에 따	3. 도서시설		
		3 제2소제1오에 따 관 등 도서시설	도서관	도서 또는 정보 서비스	
			문고	7/1 7° 0° 7° 1° 1°	
[[리시] 스 지 <u>구</u>		술회관 등 공연시설교 종합시설	공연과 그 외 기능		
문화예술진흥 법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 른 문화시설	로서 다	창작활동을 영위하; 중이용에 제공되는 / 을 공연 · 전시 등을 ह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	
		ㅁ흸쉢스지층버	4. 지역문화복지 시설		
	바. 그 밖 에 대통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의집	커뮤니티 등 회합	
	령으로 정	제2조제1항제1 호 지역문화복	복지회관	시바사본	
	하는 시설	지시설	문화체육센터	체육	
			청소년활동시설	수련, 교육 등	
		문화예술진흥법	5. 문화 보급 · 전 수시설	전수	
		시행령 제2조제 1항제2호 문화	지방문화원	전수, 기록 등	
		18시12도 군화 보급·전수시설	국악원	전수, 공연 등	
			전수회관	전수	

생활문화시설 범주	세부조항	세부시설	주가능	
평생교 육 법 제21	조 및 제21조2에 의한 평생학습	평생학습관 (시군구)	교육	
관, 평생학습센	터	평생학습센터 (읍면동)	교육	
건축법 시행령 밝	5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커뮤니티, 회합, 등	
지역자치센터 및	! 마을회관	마을회관	커뮤니티, 회합, 등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가이드 적용	
	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미디어에 기반한 교육, 창작	
	I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역미디어시설	미디어에 기반한 교육, 창작	
		지역문화예술창 작 공 간	창작	

이러한 생활문화시설의 기능과 일반농산어촌사업에 공급되는 시설의 명 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의 기능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 68)

⁶⁸⁾ 이러한 범주 분류는 본 연구에서 개별 일반농산어촌사업에서 문화시설 공급여부를 판별하고 전체적인 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자에 의한 조작적 정의임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므로 다른 연구에서 광의 문화개념에서 문화적 용도의 시설을 판별하는데 본 연구의 기준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시설유형 판단기준

시설 기능 유형	7준	비고
다목적 회관	• 시설 명칭에 '다목적 회관', '다목적 센터' 등으로 표기 ⁶⁹⁾	일반농산어촌 사업에서 통용되는 용어
복지회관	• 시설 명칭에 '복지' 표기	
도농교류 ⁷⁰⁾ 및 활성화 센터	• 시설 명칭에 '교류', '활성화' 표기	
커뮤니티 및 주민자치	 시설 명칭에 '커뮤니티', '자치', '어울림', '시랑방', '한마음' 등 회합 및 모임, 결속 등에 관한 용어가 표기될 경우 	
마을회관 및 마을센터	• 시설명칭에 '마을'과 '회관', 또는 '센터' 등이 표기 될 경우	
수련 및 교육	• 시설명칭에 '수련', '예절', '교육', '서당' 등 수련과 교육 기능과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 및 정보	• 시설명칭에서 '도서관'임을 알 수 있을 경우	

시설 기능 유형	기준	비고
전시 및 체험	 시설의 명칭에서 전시 및 체험이 시설의 주 기능임을 알 수 있을 경위(ex. 홍보관, 갤러리, 박물관, 체험관 등) 	
창작	• '공방', 'DIY' 등 창작이 시설의 주가능임을 알 수 있을 경우	
영화관	• '영화'가 상영되는 시설임을 알 수 있을 경우	
전수	• '전수'리는 용어를 시용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용도의 시설임을 시설명칭상 알 수 있는 경우	
'문화' 명칭 사용	• 위의 언급한 시설의 기능을 시설의 명칭을 통해 알 수 있지는 않으나 '문화'라는 용어를 시설명칭에 사용한 경우	
기타	 위의 분류 기준 외에 문화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ex. 용꿈센터, 행복나눔센터, 생명사랑관, 면민회관, 권역센터 등 	

^{69) &#}x27;다목적 회관'은 일반농산어촌사업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이다.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 및 그들의 공동체(커뮤니티)의 회합, 모임, 결속 등을 위한 시설로서 이를 뒷받침하거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2가지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⁷⁰⁾ 농림부(2004)에서 '도농교류'는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며 도시와 농촌 간에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농촌의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상생 교류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람들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 정보, 자본, 서비스 등이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4.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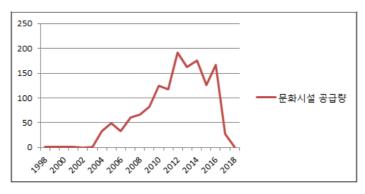
위의 판별기준을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적용하여 검색된 문화시설의 정체 수량은 1,423개소이며, 가장 많은 유형은 마을회관이었고 복지회관, 커뮤 니티·주민자치 용도의 시설, 도농교류 및 활성화센터의 순이었다.

구분	다목적 회관 (다목적 센터)	복지회관	도농교류 및 활성화센터	커뮤니티 주민자치	마을회관 (마을센터)	수련 및 교육	도서 및 정보
수량	123	278	136	184	323	31	23
비율	8.6%	19.5%	9.6%	12.9%	22,7%	2,2%	1.6%
구분	전시 및 체험	창작	영화관	전수	문화명칭	기타	계
수량	82	12	2	9	125	95	1423
비율	5.8%	0.8%	0.1%	0.6%	8.8%	6.7%	100%

〈표 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시설 유형별 공급수량

/TT 5\	일반농산어초개발사업	ㅁ딇니서	여기고그라
(± 5)	일반중산어온게임사업	군와시심	건간목급당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량	1	1	1	1	0	1	33	49	33	60	67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수량	83	125	118	191	162	176	126	167	27	1	1,423



[그림 3] 일반농산어촌사업 문화시설 공급추이

타 문화시설과 주소지가 같은 지방문화원 현황

지역	지방문화원	주소지 기관	주소지 기관 상황
	성동문화원	성동문화회관	
	중랑문회원	중랑구민회관	총람 미기재
	강 북문 회원	강 북문 화예술회관	
	도봉문회원	도봉구민회관	
서울	은평문화원	은평문화예술회관	
(10)	서대문문화원	서대문문화회관	
	양천문화원	양천문화회관	총람 미기재
	강서문화원	화곡문화의집	
	동작문화원	동작문화복지센터	
	강동문화원	강동구민회관	총람 미기재
	동래문화원	동래문화회관	
	낙동문회원	부산 북구문 화빙상센터	
부산 -	금정문화원	금정문화회관	
(6)	수영문회원	수영구생활문화센터	총람 기재 대상 이님 생활문화센터 지정
	영도문화원	영도도서관	
	시하문화원	을숙도문화회관	
	중구문회원	봉산문화회관	
[서구문화원	서구문화회관	
대구 (5)	남구문화원	대덕문화의전당	생활문화센터 지정
(5)	북구문화원	어울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정
	달서구문화원	웃는얼굴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정
	중구문회원	인천 중구문 화회관	
	연수문화원	연수구 문화의집	
인천	 부평문화원	부평역시박물관	
(6)	서구문화원	서구문화회관	
	 남구문화원	학산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정
	남동문화원	남동소래아트홀	

지역	지방문화원	주소지 기관	주소지 기관 상황
	남구문회원	남 구종 합문화예술회관	
광주	북구문화원	북구평생학습관	총람 기재 대상 아님
(3)	광산문회원	광산생활문화센터	총람 기재 대상 아님 생활문화센터 지정
대전 (1)	대덕문회원	대덕문예회관	회덕문화의집
세종 (1)	세종문회원	세종시민회관	총람 미기재
	수원문회원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정
	성남문회원	성남문화의집	
	부천문회원	송내어울마당	총람 미기재
	광명문회원	하안문화의집	
	평택문회원	평택문화예술회관	
	동두천문회원	동두천시민회관	총람 미기재
74-1	오산문화원	오산시민회관	총람 미기재
경기 (15)	의왕문화원	의왕문화의집	
(15)	용인문화원	용인시 문화예술원	총람 미기재
	파주문화원	운정행복센터	
	안성문화원	안성문예회관	총람 미기재
	김포문화원	김포 시민회관	
	화성문화원	향남문화의집	
	광주문회원	광주시문예회관	
	기평문화원	기평문화예술회관	
	속초문화원	속초문화회관	
	평창문화원	평창문화예술회관	
강원	화천문황원	화천문화예술회관	
(6)	양구문황원	양구군 문화복지센터	
	인제문화원	인제하늘내린센터	
	고성문화원	고성문화의집	
	청주문화원	청주시문화체육회관	
Ī	제천문화원	제천시민회관	
- L	보은문화원	보은문화예술회관	
충북 (7)	영동문화원	영동문화의집	
(1)	괴산문화원	괴산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지정
Ī	단양문화원	단양문화예술회관	
Ī	증평문회원	증평문화의집	

지역	쟤방문화원	주소지 기관	주소지 기관 상황
	온양문화원	온양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정
충남	금산문화원	금산다락원	
(4)	부여문화원	부여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정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의집	
	전주문화원	전 북문 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지정
거ㅂ	김제문화원	김제예술회관(구)	총람 미기재
전 북 (4)	장수문화원	한누리전당	생활문화센터 지정
(4)	순창문회원	순창문화의집 순창향토회관	
	곡성문회원	곡성레저문화센터	
	구례문화원	구례문화예술회관	
	고흥문회원	고흥문화회관	
TJ1 L	화순문화원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정
전남 (8)	장흥문화원	장흥문화예술회관	
(0)	강진문화원	강진아트홀	
	무안문화원	무안문화의집 승달문화예술회관	
	장성문회원	장성문화예술회관	
	김천문회원	김천시립문화회관	
	구미문회원	선산문화의집	
	영천문화원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정
71111	상주문화원	상주문화회관	
경북 (9)	군위문화원	군위군민회관	총람 미기재
(9)	청송문화원	청 송종 합문화복지타운	총람 미기재
	영양문회원	영양문화의집	
	고령문회원	고령문화예술회관	
	예천문화원	예천군 군민회관	
741 L	의령문회원	의령군민문화회관	
경남 (3)	남해문화원	남해문화체육센터	
(5)	히동문화원	하동문화예술회관	
제주 (1)	서귀포문회원	서귀포 시민회관	총람 미기재
계	89개 지방문화원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기재된 기 관과 주소지가 같은 지방문화원 73개소	생활문화센터로 지정된 지방문화원 14개소

03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에서 집계하는 부처별 건축·도시분야 정책사업 현황

(표 6) 중앙부처 건축도시분야 정책사업 현황

사업기간	2001~	2015~	~6003	2015~	2015~	I	2015~	2008~	2010~2017	2013~2020	1999~2025	2016	2016	2015~	2009~2013	2016~2018
지원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I	ı	ı	국7균형발전특별법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하찬법 제64조, 보조금관이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법	경관법	경관법
시엄명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시업	노후 공공임대주책 시설 개선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시업	미율주민 보호구건(Village Zore)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시업	해안궏발전 시범 · 선도시업	내륙권발전 시범 · 선도시업	지방하천사업	2016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자원 건축협정 시범시업	2016년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건축협정 시범시업	경관협정 지원 시법시업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기관									바	-					'	

사업기간	2013~2015	~6003	2013~	I	2017~2022	2010~	2014~	2014~2016	2015~	2012~2017	2010~2014	2013~2014	2015	2016~2018	2009~	2003~
지원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7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재난 및 인전관리 기본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I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사업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법시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그린리모델링 0万저원 시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시업	도시자생 뉴딜시업	도시활력증진지역시업	생활공원(도시공원) 조성시업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시업	지역수요 맞춤지원 시업	초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 시범시업	해안마을 미관카선사업	안심마을조성 시범시업	안전마을 만들기 시업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시업
가													국민안전처			

사업기간	2014~	2017 ~ 2020	2014 ~ 2019	2013 ~ 2022	2017 ~	1981 ~	2005 ~	2014 ~	2014 ~	1982 ~	2017~	~9002	2011~2014	2014~
지원근거	1	스포츠산업진흥볍 시행령 제9조제1항	관광잔흥법 제48조 및 제76조관광기본법 제9조<li li=""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관광기본법 저영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 국기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2항 6호	I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제24조의 2항 제40조 제1항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진흥법 제76조	I	지역문화진흥법 재8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1	1	I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시엄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Պ테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원시업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시업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시업	관광자원개발	국민여기캠핑장 조성 지원시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자원사업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시업	2017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공간문화개선시업(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시업)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시업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阳을) 조성 시범시업
7판	타					모처부								

사업7간		2012~	2014~	2004~2017	2004~	2015~	I	2014~	2013~	2015~	2016	2007~2018	2013~2014	2009~2011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ı	작은도서관진흥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농아촌 정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7 균형발전특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제34조, 제35의 2, 제40조 - 농담0업인 삶의질 항상 및 농산이존자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I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와 농어촌긴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아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아촌정비법 — 농아촌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신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사업명		산업관광 육성 공모사업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생활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작은도사관 조성 지원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빈집정비 시업	농촌주택 개봉자금 자원 시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시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업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시업	농업농촌 테미공원조성사업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7판											Ī	HO 마		

사업기간		2010~		2005~	2010~	2007~	2016	2016~2017	2003~2022	2012~	2017~	2007~2009	2016~	2015~
지원근거	— 도시와 농아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촌정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34조,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4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8조, 제29조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7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아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에너지법	ı	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보행인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38조의 2 교통안전법 제15조	ı	I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	ı
시업명		일반농산아촌 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신재생에년지 보급시업	저소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2016년 에너지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학교옥상 태양광시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시업	간판개선 시범시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시업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시업	미을공동체 정원사업	마을공방 육성시업
7판						I				돲	-])			

7윤	사업명	지원근거	사업기간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_	2011
	안전도시 시범시업	재난 및 안전관기본법	2009~2010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시업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66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0용에 관한 법률 등	2008~
	사호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환경보건법	~6003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존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자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56조	2011~
판 마	지면생태공간조성(생태놀이터 조성)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2014 \sim 2017$
	슬레이트 지붕 철거, 차리 시범시업	석면안전관리법	$2011 \sim 2021$
	2017년 기후변화적응 선도 시범시업	_	2017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시업	_	$2016 \sim 2020$
	생태휴식공간(지연미당) 조성시업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2012 \sim 2017$
	온실가스 감축 지원시업	_	$2016 \sim 2017$
과학7술 정보통신부	이 용복합 시범단지 조성시업	_	2016 ~ 2017
중소벤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시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2 ~
7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6~
소방방재정	방재마을 시범시업	<u> 자연재하대책법</u>	$2008 \sim 2014$
	문화유신관광자원 개발시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 제34조	2005 ∼
IN N	고도이미지 찾기 시업	1	$2015 \sim 2018$

윤	사업명	지원근거	사업기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사업	ı	2019 ~ 2023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시범시업	ı	2015~2017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시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 2, 제32조 지방자처법 제15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013 ~
	창조지역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2011 ~
마 원 원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호(재생/혁신)사업	- 노후가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4 ~ 2016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사업	丘人內內等質	$2014 \sim 2017$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ı	$2015 \sim$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시업)	ı	$2015 \sim 2018$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4 \sim 2015$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홍 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자

노 영 순(한국관광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수급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기초연구

발 행 인 김 정 만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8년 7월 31일

발 행 일 2018년 7월 31일

인 쇄 인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ISBN: 978-89-6035-715-0 93300